

Vol.1552



법원공보

2018. 9. 15. SAT

법원행정처

● 목 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124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예규	1126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180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189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206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209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211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1214	
인사	1217	
공지사항	1226	

● 규칙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99호 2018. 8. 31. 공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기 관	직 명	재 산 관 리 관	분임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 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사무국장, 그러나 고등법원과 다른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고등법원 사무국장, 동급의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 소속 사무국장	
지원	사무국 설치지원		사 무 국 장
	사무과 설치지원		사 무 과 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	분임 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이하 (생략)		

개 정 안

[별표 1]

직 명 기 관	재 산 관 리 관	분임 재산관리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	
이하 (현행과 같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0호 2018. 8. 31.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제목을 “등록사무처리”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90조(준용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 및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85조를 준용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 8. 31.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등기관”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1조 단서”를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공정증서인 경우”를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중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생 략)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
 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
 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
 에 따른다.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한다.

1. · 2. (생 략)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
 증명

4. ~ 8. (생 략)
 <신 설>

② 관공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
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 정 안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
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51조-----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
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
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
 -----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현 행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②
(생략)
〈신설〉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

----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2호 2018. 8. 31.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25조 중 “법원조직법 제51조 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3조(법조경력외의 불산입)</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p>	<p>제13조(법조경력외의 불산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둘째 ----- -----.</p>
<p>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p> <p>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p> <p>-----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 -----.</p>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3호 2018. 8. 31.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나목 중 “규칙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규칙 제85조제2항”을 “제8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중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8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5조제4항제2호 중 “중징계에 상당하는”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반복하여”를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제2항제2호 중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를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로 한다.

별표 5의2 중 “임기제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전문경력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무분야	임용예정계급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연구관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연봉4호 또는 전문임기제 가급	연봉5호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연봉6호 또는 전문임기제 다급	연봉7호 또는 전문임기제 라급	연봉등급 8호	연봉9호 또는 전문임기제 마급
별정직공무원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전문경력관			“가” 군 27호봉이상	“가” 군 26호봉이하	“나” 군 28호봉이상	“나” 군 27호봉이하	“다” 군 28호봉이상	“다” 군 27호봉이하	“다” 군 28호봉이상	“다” 군 27호봉이하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8항 중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를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제32조제9항 중 “합산한다”를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4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제5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3년”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68조의5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

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8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82조제5항 전단 중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82조의1을 삭제한다.

제8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수

를”을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의3제1항 중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5(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

다)는 결근으로 본다.

-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진단서가 있어야”를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84조제7호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체결”을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8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4항 및 제5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별표 6의4 중 “토플(TOEFL)”란 및 “텡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 티. 에스.(E. T. 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별표 9 중 “출산”란 및 “사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출산	배우자	10
----	-----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별표 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begin{array}{l} \text{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text{연가 일수} \end{array}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text{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32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

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승진 대상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7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2조의5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용어의 정의)

- 1.~3. (생 략)
- 4.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생 략)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① (생 략)
- 1.~4. (생 략)
- 가. (생 략)
- 나.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 다. 규칙 제85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신 설>

제6조(임용시기)

-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 설>
- ② (생 략)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 1.~3. (현행과 같음)
- 4. <삭 제>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① (현행과 같음)
- 1.~4.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83조제1항-----

- 다. 제85조제2항-----

- 라.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제 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제6조(임용시기)

- ① -----
-----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현 행

-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 2. 삭제
-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신 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① (생 략)
 - 1.~4. (생 략)
- <신 설>

②~⑥ (생 략)

제25조(시보의 지도·감독)

- ①~④ (생 략)
- 1. (생 략)
-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개 정 안

-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① (현행과 같음)
- 1.~4. (현행과 같음)
-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②~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보의 지도·감독)

- ①~④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
- 3. -----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

현 행

<신 설>

⑤ (생 략)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② (생 략)

1. (생 략)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생 략)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 정 안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 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3.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현 행

<신 설>

2.~3. (생 략)

③~⑦ (생 략)

⑧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단서 신설>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개 정 안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③~⑦ (현행과 같음)

⑧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 .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⑨ -----

----- 합산하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다. (생 략)

②~⑦ (생 략)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⑥ (생 략)

〈신 설〉

제48조(겸임)

① (생 략)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개 정 안

2. -----

----- 6개
월 -----

가.~다.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①~⑥ (현행과 같음)

⑦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서 제4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겸임)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 하며, 제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신 설>

③·④ (생 략)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⑧ (생 략)

<신 설>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9. (생 략)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

개 정 안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전보의 제한)

① -----

-----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9. (현행과 같음)

② -----
----- 기간 -----

1.·2. (현행과 같음)

③ -----

현 행

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제68조의4(대행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이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개정안

3년

④·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대행근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현행

②·③ (생략)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7조(근무시간)

①~③ (생략)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지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③ (생략)

〈신설〉

개정안

3.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의5(시간제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

-----.

제77조(근무시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2조제3항-----

-----.

제7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현 행

<신 설>

제81조(연가일수)

① (생 략)

재직기간	연가 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3. (생 략)

③ (생 략)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④ (생 략)

개 정 안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81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

----- . -----
----- . -----
----- . -----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④ (현행과 같음)

현행

⑤ 공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82조의1(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안

⑤ -----

-- 연가 일수(제79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⑥ (현행과 같음)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u>1년 미만</u>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82조의1 <삭제>

현 행

$$\frac{\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8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 ① -----

-----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현 행

<신 설>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④ (생략)

<신 설>

개 정 안

-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 ① -----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
-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5(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

현행

개정안

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82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국으로 본다.
-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⑤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빠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빠지 아니한다.

제83조(병가)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제83조(병가)

- ① -----

----- 범위에서 -----

현 행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연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제84조(공가)

(생략)

1.~6. (생략)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10. (생략)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개 정 안

지각·조퇴 ----- 제82조의5제5항의 ----- 따라 ----- 빼는 -----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

제84조(공가)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

8.~10. (현행과 같음)

11. -----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

현 행

제85조(특별휴가)

- ①~③ (생 략)
-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⑥~⑩ (생 략)
-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⑫ (생 략)
-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제85조(특별휴가)

-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 여성공무원 -----
-----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⑥~⑩ (현행과 같음)
 - ⑪ ----- 난임치료 -----

 - ⑫ (현행과 같음)
 - 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 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4항 및 제5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04호 2018. 8. 31.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frac{\text{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신 설>

<신 설>

2. (생 략)

②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개 정 안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다만,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시간제공무원 -----

----- . ----- , 시간제 근무공무원 -----
-----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예 규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6호 2018. 8. 27.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1). (가) 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3. 가. (1). (나). 3) 중 첫 번째 ※ 다음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 (2). (가)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를 “「공무원연금법」 제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단서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법원공무원규칙」 제 8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3. 가. (3). (다)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재직기간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3. 가. (3). (다).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잔여 연가 일수”를 “잔여 연가 일수와 보유한 저축연가일수”로 한다.
3. 가. (3). (다). 1). ※ 중 “2일”을 “2일이고, 보유한 저축연가일수가 1일”로 하고, “2일(월·화)”을 “2일(월·화)과 저축연가일수 1일(수)”로 하며, “3일(수~금)”을 “2일(목·금)”으로 한다.
3. 가. (3). (다). 3) 다음의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연가 사례 표를 삭제한다.
3. 가. (3).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해당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예시 1)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019.7.1.부터 1년간 휴직하였음(저축연가는 없음) → A는 2019.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3.~21.)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28.)을 당겨 사용하고 휴직하였음

- 1) 공무원 A가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3.~28.까지 총 19일 → 이 중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총 12일(6.13.~28.)을 결근 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③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⑳	㉑	(22)
(23)	㉒	㉓	㉔	㉕	㉖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_ 결근일

(예시 2)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019.7.1. 퇴직했음(저축연가는 없음) → A는 2019.7.1.에 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3.~6.21.)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28.)을 당겨 사용하고 퇴직하였음

- 1) 공무원 A가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3.~28.까지 총 19일 → 이 중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12일(6.13.~28.)을 결근 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③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⑳	㉑	(22)
(23)	㉒	㉓	㉔	㉕	㉖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_ 결근일

(예시 3)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2일을 당겨 사용하고 5.1.에 휴직했다가 9.1.에 복직했음(저축연가는 없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4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는 6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 10월에 16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하여 11월에 상환하였을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가 0이 되어 결근 처리하지 않음

3. 가. (4). (가) 중 “일수률”을 “일수률 10일 이상으로”로 하고, 3. 가. (4). (가). 1) 중 “결정”을 “10일 이상으로 결정”으로 하며, 3. 가. (4).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권장연가일수}$$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등

※ 저축가능 일수 관련 예시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3개월 공로연수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8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11일	
제외기간: 6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9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8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9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8일
(개인)	연가사용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7일	
		소멸 7일	저축/보상일수 8일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2일인 기관, 3개월 휴직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미보상 10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권장연가일수와 미보상연가일수가 다른 경우 미보상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연가저축 가능일수) 9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13일	
제외기간: 6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8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9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8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9일
(개인)	연가사용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6일	
		소멸 6일	저축/보상일수 9일

(예시 3)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신규 임용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6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11일	
제외기간: 11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2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6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6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개인)	연가사용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4일	
		소멸 4일	저축/보상일수 6일

(예시 4)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균입대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6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11일
제외기간: 11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12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6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6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연가 미사용일수 4일	연가 미사용 일수 6일
연가사용일수: 2일	소멸 4일	저축/보상일수 6일

(예시 5) 권장연가일수 10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균입대

- 연가보유일수 14일, 실제 연가사용 19일(기존 14일 + 연가 미리 사용 5일)인 경우
 - (결근 일수) 12일

연가보유일수 14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4일
제외기간: 7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5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2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5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2일
연가사용일수: 19일	결근 일수: -12일	

(예시 6) 권장연가일수 10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퇴직

- 연가보유일수 18일, 실제 연가사용 18일인 경우
 - (결근 일수) 9일

연가보유일수 18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8일
제외기간: 9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9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5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4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5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4일
연가사용일수: 18일	결근 일수: -9일	

3. 가. (4). (마)를 3. 가. (4). (바)로 하고, 3. 가. (4).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

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 중에서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다만,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은 촉구하려는 연가일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권장연가 통보 및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3일(연가미보상) 기관

- 공무원 A가 2019.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미보상하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외에 2일을 추가로 연가사용촉진(연가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고, A는 12일(권장연가일수 13일 중 미사용연가 10일 + 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
→ 연가 촉진한 15일(당초 권장연가일수 13일 + 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5일(연가보상) 기관

- 공무원 A가 2019.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연가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음. A가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자 9.1.에 연가사용을 촉구한 12일 중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해 11월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음
→ 당초 권장연가일수가 15일이고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면서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3일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됨

3. 가. (5). (가) 중 “3년까지”를 “10년까지”로 하고,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를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가. (5). (가). 1). 가) 중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하여 이월·저축이 가능하다.

3. 가. (5). (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 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

(예시) 공무원 A의 소속기관 미보상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3. 가. (5). (가). 1). 다),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한편,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

(예시 1) 권장연가일수가 13일(연가미보상 기관)

- 소속직원 A가 1.1.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외 2일을 추가로 사용 촉진하여 총 15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후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연도 말 기준 20일의 연가보유일수 중 5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예시 2) 권장연가일수가 13일(연가보상 기관)

- 소속직원 A가 1.1.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에 대해 사용 촉진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후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연도 말 기준 20일의 연가보유일수 중 8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라) 이월·저축하는 연가 일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가. (5).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대 10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는 사용할 수 있다.

※ 저축연가 소멸 예시

- 2018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16년 5일, 2017년 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경우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17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5일은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3. 가. (5). (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축연가는 저축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범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이월·저축한 연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범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3. 가. (5). (나) 중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되는 연도에 다음의 경우”를 “다음의 경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저축연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소멸되는 저축연가일수와 소멸일자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가. (5). (나). ※를 삭제한다.

3. 가. (8).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다.

1)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시)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저축연가일수가 5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20일-35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3. 가. (8). (나)와 (다)를 각각 (다)와 (라)로 하되, 3. 가. (8). (다)의 본문 중 “아래 (다)”를 “아래 (라)”로 하고, 3. 가. (8).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

3. 가. (8). (마),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 ~ (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하는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하는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예시 1)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고, 저축연가 6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9.7.1.부터 2020.6.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 따라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 2019.6.4.부터 18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고 그 중 A가 보유하고 있던 저축연가 6일로 차감하여 최종 3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 1) 공무원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28.까지 총 18일

2)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6일, 27일, 28일 → 총 3일 결근 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㉔	㉕	(22)
(23)	㉖	㉗	㉘	㉙	㉚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_ 결근일

(예시 2)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019.7.1. 퇴직했음. A는 2019.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저축연가는 없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 1) 공무원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28.까지 총 18일 →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일(18일~28일) 결근 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㉔	㉕	(22)
(23)	㉖	㉗	㉘	㉙	㉚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_ 결근일

(예시 3)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하고 2019.5.1.에 휴직을 했다가 9.1.에 복직했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2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는 4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하여 10월에 상환하였을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가 0이 되어 결근 처리하지 않음

(바) 한편, (마)의 절차에 따라 결근 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연도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용한 연가일수에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에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일반직 공무원 A가 보유한 연가 21일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3일을 5월까지 미리 사용한 후 6.30.에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3. 가.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시간을 연가로 저축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2) 기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사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1) 연가로 적립할 시간은 매월 말일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 2)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1월 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

- 7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 1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다) 시간외근무한 시간은 다음 날부터 동일한 달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로 이월·저축하는 것도 시간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1) 1월 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

(예시 2) 1월 31일까지 21시간 15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21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과 연가로 저축하여 이월할 시간을 각각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15분은 절사)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한 시간은 다음 달 1일에 저축한 것으로 보며, 다음 달로 이월·저축한 연가는 취소할 수 없다.

(마) 다음 달로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바) 공휴일 등에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연가(시간)로 적립·사용, 대체휴무 이용(단, 대체휴무 요건 충족 필요)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3. 나. (3).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병가의 기간은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예시 1)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예시 2) 2개 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예시 3)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3. 다. (1). (사)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3. 다. (1). (타) 중 “체결”을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

정)”으로 한다.

3. 다. (2). (나) 중 “일수를 포함한다.”를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3. 다. (2).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없다.

- 1)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회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2)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그 밖에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각급 법원 등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3. 라. (1).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3. 라. (1).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다만,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 2)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시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시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예시 4) 2019년 6월 8일(토)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7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8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3. 라. (2). (마) 중 “불임치료기술”을 “난임치료 기술”로 한다.

3. 라. (4).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라. (4).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예시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출·퇴근시간 (하루 근무시간)	09:00~21:30 (10시간 30분)	09:00~21:30 (10시간 30분)	09:00~21:00 (10시간)	09:00~15:00 (5시간)	09:00~14:00 (4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3. 라. (5).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4)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할 수 있다.
- 5) 육아시간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6)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라. (5). (나) 중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을 “신청”으로 하고, 3. 라.

(5).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3. 라. (9).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류(진단서 등)를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할 수 있음

3. 라. (9). (나)를 3. 라. (9). (다)로 하되, “있음”을 “있다”로 하고, 3. 라. (9).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한다.

4. 를 5. 로 하고,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 제4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라. 하루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의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4항 및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단절 없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4시간을 1일로 봄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frac{\text{「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위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24개월의 범위 산정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예시

구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하루 4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격일제 (월·수 8시간, 금 4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소속기관의 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예규 3. 가. (5).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예규 3. 가. (8).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예규 3. 가. (8). (나)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예규 3. 가. (9)의 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병가에 관한 적용례) 예규 3. 나. (3)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공가에 관한 적용례) 예규 3. 다. (1). (사) 또는 (타)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예규 3. 라. (1).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3. 가. (8). (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규 3. 가. (3). (라) 및 3. 가. (8).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9.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예규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예규 3. 라.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시간의 공제는 위의 예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근무기간	연가 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생략)

(나) 연가일수의 가산

1)·2) (생략)

3)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생략)

○ (생략)

※ (생략)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4) (생략)

(다) (생략)

개정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현행과 같음)

(나) 연가일수의 가산

1)·2) (현행과 같음)

3)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생략)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신 설>

(나) (생 략)
 (3) 연가계획 및 승인
 (가)·(나) (생 략)
 (다)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개 정 안

(2) 재직기간
 (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육아휴직(「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나) (현행과 같음)
 (3) 연가계획 및 승인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해당 -----

 -----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1)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 예컨대, 잔여 연가 일수가 2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월~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 일수 2일(월·화)을 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3일(수~금)을 사용 신청해야 한다.

2) · 3) (생략)

※ 사례

< 연도 변경이 없는 경우 >

- 3.1.자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6.1.자로 3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9.1.자로 3일(누적 6일)의 연가가 발생함
- 다음 재직기간에 발생하는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공무원은 9.1.자로 발생하는 3일의 연가만 미리 사용할 수 있음

2015년

< 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

- 8.1.자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11.1.자로 3일의 연가가 발생하지만, 연도가 변경되는 1.1.자로 해당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인 3일이 새로 발생하고 2.1.자로 3일(누적 6일)의 연가가 발생함
- 이 경우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공무원은 1.1.자로 발생하는 3일의 연가와 2.1.자로 발생하는 3일의 연가를 각각 미리 사용할 수 있음

2015년 2016년

개정안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1) 해당 ----- 잔여 연가 일수와 보유한 저축 연가 일수 -----

※ ----- 2일이고, 보유한 저축연가일수가 1일 ----- 2일(월·화)과 저축연가일수 1일(수) -----, ----- 2일(목·금) -----

2) · 3)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라) (생략)
〈신설〉

개 정 안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해당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 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현행

<신설>

개정안

(예시 1)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019.7.1.부터 1년간 휴직하였음(저축연가는 없음) → A는 2019.7.1.에 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3.~6.21.)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28.)을 당겨 사용하고 휴직하였음

- 1) 공무원 A가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3.~28.까지 총 19일 → 이 중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총 12일(6.13.~28.)을 결근 처리함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③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⑳	㉑	(22)
(23)	㉒	㉓	㉔	㉕	㉖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예시 2)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4일이었으며, 2019.7.1. 퇴직했음(저축연가는 없음) → A는 2019.7.1.에 퇴직했으므로 7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하지만 부여받은 연가 14일(6.3.~6.21.)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5일(6.24.~28.)을 당겨 사용하고 퇴직하였음

- 1) 공무원 A가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3.~28.까지 총 19일 → 이 중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7일을 제외한 12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12일(6.13.~28.)을 결근 처리함

현행

개정안

- (4) 연가 사용의 권장
 - (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1)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생략)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③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㉑	㉒	(22)
(23)	㉔	㉕	㉖	㉗	㉘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_ 결근일

(예시 3)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2일을 당겨 사용하고 5.1.에 휴직했다가 9.1.에 복직했음(저축연가는 없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4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는 6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 10월에 16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하여 11월에 상환하였을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결근 처리대상일수가 0이 되어 결근 처리하지 않음

- (4) 연가 사용의 권장
 - (가) -----

----- 일
수를 10일 이상으로 ----- .
 - 1) -----

10일 이상으로 결정 ----- .
 - 2) (현행과 같음)

현 행

<신 설>

개 정 안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등

※ 저축가능 일수 관련 예시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3개월 공로연수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8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11일	
제외 기간: 6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1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9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8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9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8일	
(개인)	연가사용 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7일 소멸 7일	연가 미사용 일수 8일 저축/보상일수 8일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2일인 기관, 3개월 휴직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미보상 10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권장연가일수와 미보상연가일수가 다른 경우 미보상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연가저축 가능일수) 9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13일	
제외 기간: 6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1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8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9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8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9일	
	연가사용 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6일 소멸 6일	연가 미사용 일수 9일 저축/보상일수 9일

현행

개정안

(예시 3)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신규 임용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지축 가능일수) 6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11일
제외기간: 11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12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6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6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6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연가사용 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4일	연가 미사용 일수 6일
	소멸 4일	저축/보상일수 6일

(예시 4)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군입대
 ● 연가보유일수 23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연가지축 가능일수) 6일

연가보유일수 23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2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11일
제외기간: 11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12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6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6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6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6일
연가사용 일수: 2일	연가 미사용일수 4일	연가 미사용 일수 6일
	소멸 4일	저축/보상일수 6일

(예시 5) 권장연가일수 10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군입대
 ● 연가보유일수 14일, 실제 연가사용 19일(기준 14일 + 연가 미리 사용 5일)인 경우
 - (결근 일수) 12일

현 행

개 정 안

연가보유일수 14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4일
제외 기간: 7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7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5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2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5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2일
연가사용일수 : 19일	결근 일수 : -12일

(예시 6) 권장연가일수 10일(연가미보상)인 기관,

2019.7.1.자로 퇴직

- 연가보유일수 18일, 실제 연가사용 18일인 경우
- (결근 일수) 9일

연가보유일수 18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10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8일
제외 기간: 9일	실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9일
수정된 권장연가일수(미보상) : 5일	수정된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 4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5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4일
연가사용일수 : 18일	결근 일수 : -9일

(나) ~ (라) (생략)
<신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일수 중에서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현 행

개 정 안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은 촉구하려는 연가 일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권장연가 통보 및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

(예시 1) 권장연가일수 13일(연가미보상) 기관

• 공무원 A가 2019.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미보상하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외에 2일을 추가로 연가사용 촉진(연가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고, A는 12일(권장연가일수 13일 중 미사용연가 10일+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
→ 연가 촉진한 15일(당초 권장연가일수 13일 +추가로 촉진제가 적용된 2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예시 2) 권장연가일수 15일(연가보상) 기관

• 공무원 A가 2019.1.1.자로 부여받은 연가일수는 20일, 그 중 6월까지 3일만 사용하였음.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을 촉진(연가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음. A가

현행

(마) (생략)

(5) 연가의 저축

(가)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된다.

1) (생략)

가) 공무원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 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된 연가일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나)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 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개정안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자 9.1.에 연가사용을 촉구한 12일 중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해 11월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음

→ 당초 권장연가일수가 15일이고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2일에 대해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면서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3일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됨

(바) (현행 (마)와 같음)

(5) 연가의 저축

(가) -----
----- 10년까지 -----
----- .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 -----
----- .

1) (현행과 같음)

가) -----

----- . 다만, 연가 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하여 이월·저축이 가능하다.

나)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

현행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장연가 일수의 30퍼센트 범위내의 미사용 연가 일수를 자동으로 추가 이월·저축할 수 있다.

〈신설〉

※ 이월·저축하는 연가 일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개정안

----- 있다.

(예시) 공무원 A의 소속기관 미보상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다) 한편,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

(예시 1) 권장연가일수가 13일(연가미보상 기관)

- 소속직원 A가 1.1.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외 2일을 추가로 사용 촉진하여 총 15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후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연도 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 중 5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예시 2) 권장연가일수가 13일(연가보상 기관)

- 소속직원 A가 1.1.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 7.1.에 소속기관장이 권장연가일수 중 12일에 대해 사용 촉진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후 연도 말일까지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 중 10일만 사용한 경우 연도 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 중 8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라) 이월·저축하는 연가 일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현행

※ 저축가능 일수 관련 사례

<사례1> : 권장연가일수 18일(연가 미보상)인 기관
 • 연가일수 23일, 연가사용 5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최소 5일(A) ~ 최대 10일(A + B)

연가보유일수 23일			
기간	권장연가일수(미보상) 지정 18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5일
개연	연가사용 일수 5일	연가 미사용일수 13일	연가 미사용 일수 5일
	소멸 8일	저축가능 5일(A)	저축/보상일수 5일(B)
개인선(일수 초과 범위 내에서 미사용 연가)을 저축 가능			

개인선(일수 초과 범위 내에서 미사용 연가)을 저축 가능
 개인선(일수 초과 범위 내에서 미사용 연가)을 저축 가능
 개인선(일수 초과 범위 내에서 미사용 연가)을 저축 가능

<사례2> : 권장연가일수 12일(연가 보상)인 기관
 • 연가일수 21일, 연가사용 8일인 경우
 - (연가저축 가능일수) 최소 1일(A) ~ 최대 15일(A + B)

연가보유일수 21일			
기간	예산 부족 미보상 연가일수 7일		예산범위 내 연가보상 14일
개연	연가사용 일수 6일	미사용 일수 1일	연가 미사용 일수 14일
		저축가능 1일(A)	저축/보상일수 14일(B)
개인선(연가 미사용일수) 및 연가보상일수(미) 범위 내에서 저축 가능함			

- 2) (생략)
- ※ (생략)
- 가) (생략)
- 3) 최대 3년의 저축 가능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그때까지 저축한 연가 일수는 사용가능하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주기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축연가 분할 사용 사례

○ 2015년 2일, 2016년 7일을 이월·저축하였는데,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해야 하나요?
 ⇒ 저축연가는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해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15년에 저축한 연가 일수부터 사용할 수 있음.

개정안

<삭제>

- 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3) ----- 10년 -----

 ----- 사용할 수 있다.

※ 저축연가 소멸 예시

<삭제>

현행

○ 2018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16년 5월, 2017년 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연도부터 최대 3년까지 저축 가능하고,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 저축한 연가는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17년에 저축한 5일은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신설>

(나) 3년의 저축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되는 연도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

○ -----

⇒ ----- 그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됨. 따라서 2016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경우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17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5일은 2027년까지 -----, -----, -----.

4) 저축연가는 저축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범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이월·저축한 연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범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나) 다음의 경우 -----

-----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저축연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소멸되는 저축연가일수와 소멸일자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 이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 후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권장연가 일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 1) ~ 4) (생략)
- (6)·(7) (생략)
- (8)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

<신 설>

개 정 안

<삭 제>

- 1) ~ 4) (현행과 같음)
- (6)·(7) (생략)
- (8) 연가일수의 공제

(가) -----

----- 해당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다.

- 1)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2) 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현행

개정안

는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 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시)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저축연가일수가 5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20일-35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신설>

(나)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frac{\text{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text{연가 일수}}$$

(나)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다)와 같이 한다.

(다) -----

----- 아래 (라)

현 행

(다) (생략)
 <신설>

개 정 안

(라) (현행 (다)와 같음)

(마) (가) ~ (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현행

<신설>

개정안

(예시 1)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고, 저축연가 6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9.7.1.부터 2020.6.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 따라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지만, 2019.6.4.부터 18일의 연가를 전부 사용함.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고 그 중 A가 보유하고 있던 저축연가 6일로 차감하여 최종 3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 1) 공무원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28.까지 총 18일
- 2)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6일, 27일, 28일 → 총 3일 결근 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⑳	㉑	(22)
(23)	㉒	㉓	㉔	㉕	㉖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예시 2)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019.7.1 퇴직했음. A는 2019.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저축연가는 없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 1) 공무원 A가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28.까지 총 18일 →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일(18일~28일) 결근 처리

2019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④	⑤	(6)	⑦	(8)
(9)	⑩	⑪	⑫	⑬	⑭	(15)
(16)	⑰	⑱	⑲	⑳	㉑	(22)
(23)	㉒	㉓	㉔	㉕	㉖	(29)
(30)						

() 휴일 ○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현행

개정안

<신설>

(예시 3) 공무원 A가 2019.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하고 2019.5.1.에 휴직을 했다가 9.1.에 복직했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2일을 사용했으므로 결론 처리대상일수는 4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하여 10월에 상환하였을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결론 처리대상일수가 0이 되어 결론 처리하지 않음

(바) 한편, (마)의 절차에 따라 결론 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연도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용한 연가일수에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시) 일반직 공무원 A가 보유한 연가 21일과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3일을 5월까지 미리 사용한 후 6.30.에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9)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

<신설>

현행

개정안

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시간을 연가로 저축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기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로 적립·사용하는 시간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사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1) 연가로 적립할 시간은 매월 말일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1월 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

- 7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 1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다) 시간외근무한 시간은 다음 날부터 동일한 달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로 이월·저축하는 것도 시간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현 행

개 정 안

(예시 1) 1월 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

(예시 2) 1월 31일까지 21시간 15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21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과 연가로 저축하여 이월할 시간을 각각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15분은 절사)

(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한 시간은 다음 달 1일에 저축한 것으로 보며, 일단 다음 달로 이월·저축한 연가는 취소할 수 없다.

(마) 다음 달로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바) 공휴일 등에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연가(시간)로 적립·사용, 대체휴무 이용(단, 대체휴무 요건 충족 필요)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나. 병 가

(1) ~ (2) (현행과 같음)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병가의 기간은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병 가

(1) ~ (2) (생략)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 (나) (생략)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2)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병가 일수 산정 예시

(예시 1)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예시 2) 2개 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예시 3)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의 병가 제도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4) (생략)

다. 공가

(1) (생략)

(가) ~ (바) (생략)

(4) (현행과 같음)

다. 공가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현 행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아) ~ (차) (생 략)

(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생 략)

※ (생 략)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한다.

(다) ~ (라)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사) -----
-----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아) ~ (차) (현행과 같음)

(타) -----

-----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
-----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없다.

- 1)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현행

- (3) (생략)
- 라. 특별휴가
- (1) 경조사휴가
-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나) ~ (다) (생략)
-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 2)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그 밖에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각급 법원 등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3) (현행과 같음)
- 라. 특별휴가
- (1) 경조사휴가
-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나) ~ (다) (현행과 같음)
- (라) -----

-----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 행

<신 설>

<신 설>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2) 출산휴가
 - (가) ~ (라) (생 략)
 - (마)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 정 안

- 1) 다만,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 2)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예시 1) -----

- (예시 2) -----

- (예시 3) -----

- (예시 4) 2019년 6월 8일(토)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4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7월 7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2일), 30일이 초과 되는 7월 8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2) 출산휴가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 난임치료 시술 -----

현행

- (3) (생략)
- (4) 모성보호시간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84일)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246일~)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 (3) (현행과 같음)
- (4) 모성보호시간
 - (가) ----- 여성공무원은 -----

----- .
 -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예시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신 설>

(나) (생 략)

<신 설>

(5) 육아시간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신 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 예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출·퇴근시간 (하루 근무시간)	09:00~21:30 (10시간 30분)	09:00~21:30 (10시간 30분)	09:00~21:00 (10시간)	09:00~15:00 (5시간)	09:00~14:00 (4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5) 육아시간

(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생략)

(다) (생략)

<신설>

(6) ~ (8) (생략)

(9) 자녀돌봄휴가

개정안

4)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할 수 있다.

5) 육아시간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
----- 신청 -----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6) ~ (8) (현행과 같음)

(9) 자녀돌봄휴가

현 행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신 설〉

※ (생략)

※ (생략)

〈신 설〉

개 정 안

(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

현 행

<신 설>

(나)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표 (생 략)

<신 설>

개 정 안

류(진단서 등)를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할 수 있음

(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 휴가를 연 1일 가산한다.

(다) ----- 있다.

표 (현행과 같음)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라. 하루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의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79조제4항 및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
(日) 단위로 계산한다.

※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단절 없이 보장한다는 의
미에서 그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4시간을 1
일로 본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
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
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
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
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begin{array}{c}
 \text{「법원공무원규칙」 제81} \\
 \text{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text{연가일수}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c}
 \text{시간제근무공무원,} \\
 \text{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text{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
 \text{근무시간}
 \end{array}}{\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
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
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3. 병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위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24개월의 범위 산정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예시

현 행

개 정 안

구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하루 4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격일제 (월·수 8시간, 금 4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제79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생략)

5. (현행 4.와 같음)

◎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7호 2018. 8. 24. 결재)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판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소식	대법원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청사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말, 약력, 역대 대법원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실·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결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공고	입법예고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금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 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개인정보파일		전산정보관리국, 각급법원	등록/수정
예산집행 실명제 현황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실·국·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건의)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자료	홍보동영상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정책홍보자료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간행물	각 실·국·과	내용관리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후생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연감	기획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④ 사법부 소개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학술지 『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⑤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 가사, 행정, 특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국선 변호인선정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 사건 검색, 사건 구분 안내, 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히)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상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 등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⑥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⑦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기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4조(홈페이지 구축) ① (생략)

② 법원 홈페이지와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법원 홈페이지는 국문·영문·어린이·관리자 홈페이지로 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로 표기하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코너

주매뉴	부매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사법부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② 대법원 코너

주매뉴	부매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수석재판연구관실	기획, 내용관리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발령, 연설문, 역대 대법원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장(동정)	대법원장비서실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세소식	각 살구과	세소식 자료 제공
주요관결	대법원 보도자료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주요관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선고 동영상	수석재판연구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청사소개	기획제1심의관	내용관리
청사안내	청사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소개	공보관실	내용관리
	공개변론방청 안내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대법원 견학 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개정안

제4조(홈페이지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법원 홈페이지 -----

----- .

[별표 1]

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게이트웨이)

주매뉴	부매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② 대법원 홈페이지

주매뉴	부매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재판	전원합의제 재판 안내	수석재판연구관실, 공보관실	등록/수정
	주요관결	수석재판연구관실,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공개변론	민사과, 형사과	내용관리, 동영상 자료 제공
소식	선고 영상	민사과, 형사과	동영상 자료 제공
	재판 절차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세소식	각 살구과	세소식 자료 제공
	대법원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 보도자료(보도대행)	공보관실	등록/수정
	대법원장 연설문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안내	대법원장 동정	대법원장 비서실	등록/수정
	청사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청사 갤러리	총무담당관실	등록/수정
법원전시관	찾아오시는 길	총무담당관실	내용관리
	법원전시관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단체견학신청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대법원소개	대법원장인사발령, 연설문, 역대 대법원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기능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구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의 기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현행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살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원사람들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등록/수정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급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중앙지법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중앙지법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	접수, 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예산집행실명정보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 위치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살국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합의한 법랑신고센터)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예산상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자료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홍보동영상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홍보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총무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개정안

③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메인화면		기획제1심의관실	기획, 내용관리
소식	새소식	각 살국과	새소식 자료 제공
	포토뉴스	공보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 소식	각급법원	등록/수정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공보관실	등록/수정
	사법교류	국제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동정	공보관실	등록/수정
	법원공보	공보관실	내용관리
	뉴스레터	공보관실	등록/수정
	이메일클럽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각급법원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등록/수정
언론보도판결		공보관실	등록/수정
공고	계약입찰공고	시설담당관실, 기술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각급법원	등록/수정
	입법예고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공시송달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회생·파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무죄판결공시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공시최고·제권판결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보관급조회안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회생·회사 M&A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내용관리, 등록/수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감사관실	내용관리, 등록/수정	
정보	사건검색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공탁사건검색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판결서 인터넷열람	재판사무국	내용관리, 접수, 처리
	판결서 방문열람	법원도서관	접수, 처리
	사법통계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최근법령정보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예산집행실명정보	예산담당관실	등록/수정
	전국법원·등기소 정보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관련 사이트	전산정보관리국	등록/수정
참여	소통의 장(법원에 바란다)	종합민원과, 각 살국과	접수, 전달, 처리
	소통의 장(부조리신고센터)	윤리감사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합의한 법랑신고센터)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예산상비신고센터)	예산담당관실	접수, 처리
	소통의 장(홈페이지개선의견)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자료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접수, 처리
	행정심판청구	기획제2심의관실	접수, 처리
	홍보동영상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공보관실	내용관리
사법발전재단자료	사법발전재단자료	각 살국과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복지홍보담당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정책연구용역자료	정책연구용역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등록/수정
	사법발전재단자료	기획제2심의관실	내용관리

현행

④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양식모음	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상답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원 총무과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⑤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내용관리

⑥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개정안

④ 사법부 소개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사법부 소개	법원의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구성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직무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정보화	전산정보관리국	내용관리
	사법의 국제화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의 역사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학습지 『사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내용관리

⑤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절차안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형사, 국민참여재판 일정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내용관리
	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지원	소송구조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장애인사법지원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사건검색	나의사건검색, 사건구분안내, ARS안내	사법지원심의관실	정보제공범위 관리
민원안내	양식모음(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원회생, 법원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형사,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양식모음(공탁)	사법등기심의관실	등록/수정
	양식모음(정보공개청구)	종합민원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사법지원심의관실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과	등록/수정
	자주묻는질문(다른법원 상담사례보기)	각급법원	등록/수정
생활속의 법이야기	양보와 타협의 민사조정원 총무과	사법지원심의관실, 각급법원 총무과	내용관리

⑥ 영문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전체	전체	국제심의관실	내용관리
	Decisions	법원도서관	내용관리

현행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방명록		전산정보관리국	접수, 처리
알기 쉬운 용어설명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개정안

⑦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사법부 소개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사법부 조직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대법원 둘러보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동영상보기	기획제1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필요성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역할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종류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의 발전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이 되려면	법관이란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관의 자격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법원공무원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그 외 법원관계인	기획제1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의 종류와 절차	재판의 종류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재판청구권 보장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법률구조제도	사법지원심의관실	내용관리
	동화 속 법률이야기	공보관실	내용관리
법교육	애니메이션	사법정책심의관실	동영상 자료 제공
	법교육교재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알쏭달쏭 OX 퀴즈		사법정책심의관실	내용관리
어린이 기자단	어린이 소식지	공보관실	내용관리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8호 2018. 8. 30.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규칙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경력의 50퍼센트 중”을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하여”로 하고, “2/3”를 “3분의 2”로 한다.

제3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3(자기개발휴직 사유) 법 제71조제2항제7호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44조의4(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 ④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 ⑤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6(휴직의 목적 외 사용)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규칙 제88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44조의7(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 ③ 휴직검증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휴직검증위원회는 제44조의8 및 제44조의9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휴직검증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68조의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밖에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의8(휴직 실태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9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9(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을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한다.

- ① 임용권자는 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행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단, 출산휴가 및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16조제1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10배수
2	결원 1인당 8배수
3~5	결원 1인당 6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30인
11~24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45인
25 이상	결원 1인당 3배수

비고 :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별지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 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자기개발계획서(제44조의4 관련)

(앞 쪽)

【요약서】

인적사항	성 명		직 급(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최근3년)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사용여부			
연구·학습주제				
목 적				
주요 연구·학습내용				
방 법				
일 정				
향후 활용계획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의해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유의사항

1. 목적 : 자기개발휴직 신청 사유 기재
2. 방법 :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방법,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방법 등 세부적으로 기재
3. 일정 : 자기개발 세부방법에 따른 일정 기재
4. 활용계획 :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8호 서식]

(뒤 쪽)

【본 문】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연구·학습 주제, 목적, 내용, 방법, 추진일정 및 휴직경험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포함
2. 연구·학습 목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술
3. 필요 시 보직경로 기술
4.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그 외 기관에서 심사에 필요한 항목 지정 가능
6.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44조의8 제2항)

□ 기관명 : 0000법원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명)
2분기 운영지원과, (6급 000외 --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의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구분	적발인원	휴직종류	적발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소속기관명	0명	육아휴직	휴직종료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휴직	휴직종료후	•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업 제외, 유학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소속기관명	0명	육아휴직	휴직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휴직	휴직중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을 명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44조의9 제1항 관련)

1. 소 속	00법원 00과		
2. 직 급	00서기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8.01.01 ~ 2019.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해 당 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해당시) <input type="checkbox"/> 1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1월 이상~3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월 이상~6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월 이상~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③ 고의성(<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input type="checkbox"/> 허용, <input type="checkbox"/>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000 법원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서 인정하여 -----

----- 3분의 2 -----
-----)

제33조의1(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4조의3(자기개발휴직 사유) 법 제71조제2항제7호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44조의4(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④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⑤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현행

개정안

<신설>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제44조의5(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6(휴직의 목적 외 사용)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규칙 제88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신설>

제44조의7(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는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휴직검증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휴직검증위원회는 제44조의8 및 제44조의9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고 판단되는 경우

⑤ 휴직검증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68조의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신설>

<신설>

개정안

⑧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밖에 휴직검증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
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의8(휴직 실태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
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
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
조의9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
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
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9(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
간 중 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
관의 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소속기
관의 장은 공무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
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
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
는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 임용권자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 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행근무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개 정 안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 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 지정할 수 있다(단, 출산휴가 및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공무원의 복귀, 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현 행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다만,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대행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해임·파면 등으로 대행근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별표 5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16조제1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10배수
2	결원 1인당 8배수
3~5	결원 1인당 6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30인
11~24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45인
25 이상	결원 1인당 3배수

비고 : <신 설>

개 정 안

⑤·⑥ (현행과 같음)

별표 5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16조제1항 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10배수
2	결원 1인당 8배수
3~5	결원 1인당 6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30인
11~24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45인
25 이상	결원 1인당 3배수

비고 :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59호 2018. 8. 30.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개 정 안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공무원의 -----

-----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현 행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 ①~③ (생 략)
- 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육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는 호봉승급 기간 및 법조경력 기간 계산에 산입한다.
- ⑤ (생 략)

개 정 안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
-----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한다.
- ⑤ (현행과 같음)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60호 2018. 8. 30. 결재)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3.가.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Ⅲ.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frac{\text{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Ⅲ. 3. 가.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호에 따라 휴직 한 후 복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인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신 설>

<신 설>

Ⅲ. 3. 나.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개정안

Ⅲ. 3. 가.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Ⅲ. 3. 나.

시간제공무원-----

-----, 시간제근무공무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력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	---------------------------------------

◎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61호 2018. 8. 30. 결재)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발령대상자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어 먼저 발령한 배열함에 “연이어 발령할 경우” 및 발령문 배열순에 따라 “기타발령”으로 발령하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사항을 파악하여 인사전산시스템 “임용사항직접입력”란의 임용구분란에 그 내용(겸임, 직무대리, 지명 등)을 입력하도록 한다.

2.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요령

가. 인사발령문(예시)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이남동	○○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지법 ○○지원장)	○○지방법원 ○○지원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2. 기타발령	
가.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김을동	법원행정처 ○○실 ○○심의관에 겸임함
	법원행정처 △△실 △△심의관 겸임을 면함

나.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예시)

※ 이남동의 기재례

연번	임용기간	임용구분	임용부서명	직위(직급)
1				
7	20 . .	전보	○○ 고등법원	판사
8	"	직무대리해제	○○지법 ○○지원	지원장(판사)

※ 김을동의 기재례

연번	임용기간	임용구분	임용부서명	직위(직급)
1				
5	20 . .	겸임	법원행정처 ○○실	○○심의관
6	"	겸임해임	법원행정처 △△실	△△심의관

[별지 제1호 서식]

예시문

법원인사발령기안지

기안자	심의관	실장	차장	처장	대법원장
관계관 서명					

기안일	발령 발간일	발령 특명호수	인사발령 법 제 ○ 호	발령 발간 책임자확인
-----	-----------	------------	-----------------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보

가. 지방법원장

- 지방법원장 김갑남 ○ 지방법원장에 포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갑동 ○ 지방법원장에 포함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길수 ○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을남 ○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남 ○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지방법원 ○ 지원장 윤일남 ○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지방법원 판사 홍길동 ○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고등법원 판사 김삼수 ○ 지방법원 ○ 지원장에 포함

라. 고등법원 판사

- 고등법원 판사 강일수 ○ 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 지방법원 판사 이삼남

마. 지방법원 판사

- 고등법원 판사 신남일 ○ 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지방법원 판사 박복동 ○ 지방법원 ○ 지원장에 포함
- 지방법원 판사 유동일 ○ 지방법원 ○ 지원 판사에 포함

2. 기타발령

가. 지방법원장

- 지방법원장 김갑남 ○ 지방법원장에 포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갑동 ○ 지방법원장에 포함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길수 ○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기타발령은 항의 명칭을 세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겸임, 직무대리, 지명 등)

*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동명이인법관특정방법에관한예규 제3조에 따라 기재한다.

● 신법령 목록 (2018. 8. 16. ~ 8. 31.)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099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8. 21	19322	4
대통령령제29100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910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9102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910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10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10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10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910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9109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9110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91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911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29113호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	"	"	36
대통령령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	37
대통령령제291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8. 28	19327	5
대통령령제2911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911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9119호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12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91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91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9123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29124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291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8. 28	19327	19
대통령령제29126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29127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21

【총리령】

총리령제148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4	19325	4
총리령제148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8	19327	24
총리령제148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총리령제148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9	19328	3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8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16	19319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29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17	19320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보건복지부령제58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	"	30
보건복지부령제58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환경부령제772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0	19321	3
외교부령제5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1	19322	40
문화체육관광부령제33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0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0
국방부령제967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24	19325	4
교육부령제161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8. 8. 30	19329	4
행정안전부령제70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689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2018. 8. 31	19330	4
기획재정부령제690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2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령	2018. 8. 31	19330	7
고용노동부령제22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여성가족부령제12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인 사

인사발령 법 제134호

2018.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	---------	-----	---------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헌중(劉憲鍾)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	--

(2018. 8.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5호

2018.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영(金智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	박신영(朴信映)	"
"	유현영(兪賢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8.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6호

2018.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 건(康 健)	2018. 8. 20.부터 2019. 6. 19.까지 미국 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2018. 8. 10.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변경			
	인사발령 법 제118호의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黃進九)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부분 “2018. 7. 18.부터 2018. 8. 14. 까지”를 “2018. 7. 18.부터 2018. 8. 12.까지”로 변경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8호

2018. 8. 1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지명			
가.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유상호(柳相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8. 8. 20.자)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오세영(吳世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8. 8. 2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9호

2018. 8.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130호 중 6. 파견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鄭恩英) 2018. 8. 27.부터 2019. 8. 26.까지 외교부 파견근무를 명함”에 관한 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0호

2018. 8.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鄭恩英)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8.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1호

2018. 8. 22.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洪東基)	2018. 9. 17.부터 2018. 10.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심 담(沈 淡)	2018. 9. 17.부터 2018. 10.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朴鍾澤)	2018. 9. 10.부터 2018. 10.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42호

2018. 8.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최은경(崔銀璟)	2018. 9. 1.부터 2018. 12. 2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영주(玄永株)	복직을 명함. 4호봉에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1.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金成謙)	복직을 명함. 6호봉에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1.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병민(朴炳敏)	복직을 명함. 9호봉에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28.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현정(文僉淨)	복직을 명함. 7호봉에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1.자)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嚴智雅)	복직을 명함. 5호봉에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8. 9. 17.자)			

3.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윤아(鄭允雅)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 파견근무를 명함
-------------	----------	--

4. 복 귀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찬(李載璨)	복귀를 명함
-----------------------------	----------	--------

(2018.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5호

2018.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尹誠根)	판사에 연임함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성(崔允誠)	판사에 연임함
			(2018.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6호

2018. 8. 2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애(李垠厓)	대법원 근무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태수(李泰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2018. 8. 30.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7호

2018. 8.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설승원(薛勝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18.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8호

2018. 8.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 판사		박보영(朴保泳)	판사에 임함. 17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18. 9.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9호

2018. 8.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지명

가. 원로법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朴保泳)	원로법관을 지명함
----------------------	----------	-----------

(2018. 9. 1.자) 끝.

공지사항

◎ 8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8월분 법률도서(692책), 일반도서(22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82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axis) 법학 입문: 법률 공부 내비게이션 / 조상희	한국학술정보	2018	
가천법학 v.11-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慶星法學 v.26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慶星大學校 法學研究所	2017	
慶熙法學 v.53-2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慶熙大學校	2018	
高麗法學 v.89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 김의겸·금태섭·이정렬·김선수 대담 / 최강욱	창비	2017	
東北亞法研究 v.12-1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東亞法學 v.79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大學校 出版部	2018	
런던 일기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막스프랑크 일기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民主法學 v.6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8	
民主社會를 위한 辯論 v.2017-2 / 역사비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법과 현대생활: 사례식 법학개론: 현대인의 법교양필독서 / 임충희	三潮社	2018	
법령해석사례집. 2017(하) / 한국 법제처	법제처	2018	
법무자료. 제329집: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베니스위원회): 2016년 연례보고서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典 v.2018-1 / 현암사	玄岩社	2018	
법철학연구 v.21-1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8	
法學 v.59-2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文集 v.42-1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 法學研究所	2018	
法學論叢 v.38-2 / 전남대학교, 法學研究所	全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8	
法學研究 v.21-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研究 v.28-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研究 v.29-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2018	
法學研究 v.29-2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忠南大學校 法學研究所	2018	
法學研究 v.56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全北大學校 出版部	2018	
附錄集: 國際編·別表·補遺·民事訴訟法新舊對照表 v.2018-2 / 현암사	현암사	2018	
서울法學 v.26-1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18	
成律: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들이 만든 학술정보지 v.13 /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성균관대학교 成律 편집위원회	2018	
亞州法學 v.12-1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앤아버 & 홍콩 일기 /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센터	2018	
옹호자들: 미네르바에서 용산참사까지 말 못 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오만한 시대의 정의로운 순간들 / 김영준	궁리	2014	
외법논집 v.42-2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34-2 /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10-1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40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일반조항으로 도피: 법과 국가에 대한 하나의 위협 / Hedemann, Justus Wilhelm	法元社	2018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김영환	세창	2018	
재판자료, 제136집: 외국사법연수논문집(37)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8	
제네바 & 프랑스 일기 /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센터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國法研究 v.34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8	
中央法學 v.20-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8	
핀테크와 법 / 강현구	씨아이알	2018	
漢陽法學 v.62 / 한양법학연구회	漢陽法學會	2018	
현대인의 생활법률: 현대인의 법교양필독서 / 임충희	三潮社	2018	
홍익법학 v.19-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8	
エトランデュテ: 在日本法律家協會會報 v.2 / 在日本法律家協會	在日本法律家協會 會	2018	
法學研究 v.53-3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 學會	2017	
法學研究 v.53-4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 學會	2018	
神戸法學年報 v.31 / 神戸大學法學部	神戸大學法學部	2017	
神戸法學雜誌 v.67-1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7	
神戸法學雜誌 v.67-2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7	
神戸法學雜誌 v.67-3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7	
(Die) Gerichtsverwaltung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Ein Rechtsvergleich / Faissner, Lea C	Mohr Siebeck	2018	
(Die) Gerichtsverwaltung in Deutschland und England / Bernstorff, Alexander von	Duncker & Humblot	2018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6-1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2018	
(The) Asian Business Lawyer v.20 /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2017	
(The) cambridge law journal v.77-1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cambridge law journal v.77-2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The) modern law review v.81-1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8	
(The) modern law review v.81-3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8	
(The) modern law review v.81-4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Yale law journal v.127-1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7	
(The) Yale law journal v.127-7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8	
(The) Yale law journal v.127-8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8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4-1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6-2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8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51-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4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lumbia law review v.118-5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8	
Cornell law review v.103-3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8	
Cornell law review v.103-4 / Cornell Law School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8	
Duke law journal v.67-6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8	
Duke law journal v.67-7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8	
Duke law journal v.67-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8	
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Ein Studienbuch / Kühl, Kristian	C.H.Beck	2015	
Festschrift für Bruno M. Kübler zum 70. Geburtstag / Kübler, Bruno M Bork, Reinhard	C.H.Beck	2015	
Festschrift für Kristian Kühl zum 70. Geburtstag / Kühl, Kristian Heger, Martin Kelker, Brigitte Schramm, Edward	C.H.Beck	2014	
Gesammelte Werke, Band 4: De jure naturae et gentium: Teil 3: Materialien und Kommentar / Pufendorf, Samuel	De Gruyter	2014	
Handbuch Rechtsphilosophie / Hilgendorf, Eric	Metzler	2017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41-2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41-3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2018	
Harvard law review v.131-2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7	
Harvard law review v.131-7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Harvard law review v.131-8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8	
Intergenerationelle Gerechtigkeit: rechtsphilosophische Begründungen mit einer Anwendung auf die bundesdeutsche Staatsverschuldung / Strack, Astrid	Nomos	2015	
Justiz und Verfahren im Wandel der Zeit: Gelehrte Literatur, gerichtliche Praxis und bildliche Symbolik: Festgabe für Wolfgang Sellert zum 80. Geburtstag / Schumann, Eva	De Gruyter Akademie Forschung	2017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8-1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8	
Kritische Justiz: KJ v.51-2 / Buckel, Sonja	Nomos	2018	
Lessico giuridico: italiano, tedesco, francese: definizioni e contestualizzazione di oltre 10000 termini / Snozzi, Alfredo	Helbing Lichtenhahn	2015	
Michigan law review v.116-5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chigan law review v.116-6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chigan law review v.116-7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chigan law review v.116-8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Minnesota law review v.102-4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8	
Minnesota law review v.102-5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8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2: Privates Bau- und Architektenrecht / Koeble, Wolfgang	C.H. Beck	2018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4: Erbrecht / Klinger, Bernhard F	C.H. Beck	2018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5: Gewerblicher Rechtsschutz, Urheber- und Presserecht / Mes, Peter Briske, Robert	C.H. Beck	2018	
Pouvoirs v.164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ouvoirs v.165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8	
Recht und Literatur: von Friedrich Schiller bis Martin Walser / Pieroth, Bodo	C.H.Beck	2015	
Stanford law review v.70-4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8	
Stanford law review v.70-5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8	
Supreme court law journal v.8-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8	
Texas law review v.96-4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8	
Texas law review v.96-5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2018	
Tulane law review v.92-4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Tulane law review v.92-5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40-1 /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2017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1-2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2018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1-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	2018	
Washington law review v.93-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2018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7-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Yonsei law journal v.8-1&2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7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7(I)-2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18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フランス法 / 瀧澤正	三省堂	2018	
法制史研究 v.67 / 法制史學會	創文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法學論叢 v.46-4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7	
法學論叢 v.47-1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8	
法學論叢 v.47-2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2018	
Einführung in das Recht Chinas / Bu, Yuanshi	C.H.Beck	2017	
Schwabenspiegel-Forschung im Donaugebiet: Konferenzbeiträge in Szeged zum mittelalterlichen Rechtstransfer deutscher Spiegel / Balogh, Elemér	De Gruyter	2015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포함 / 김주석	삼일인포마인	2018	
(가업상속공제 중심)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 김주석	삼일인포마인	2018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가 반영된) 지방소득세 실무 / 이창식	삼일인포마인	2018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 나성길	삼일인포마인	2018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더 받는 현금청산의 특별 노하우! / 김은유	파워에셋	2017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2018 전부개정법령 기준 / 박용범	법률출판사	2018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행정업무 지침서, 2018 전부개정법령 기준 / 박용범	법률출판사	2018	
(최신) 노사관계론 / 정종진	법문사	2017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I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18	
(판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II / 이상국	대명출판사	2018	
(판례와 같이보는) 토지·건축·건설 관련 법규 총서 /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	법문박스	2018	
(한 권으로 끝내는) 중국 세법과 상법 / 안치우	삼일인포마인	2018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경영권승계유형·방법·세무 / 홍성대	삼일인포마인	2018	
경제규제와 법 v.11-1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2018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학기술과 법 v.9-1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과학기술법연구 v.24-2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2018	
관광법규론 / 임형택	한울출판사	2015	
관광법규의 이해 / 김영식	한울출판사	2015	
국가정보연구 v.11-1 / 한국국가정보학회	한국국가정보학회	2018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법칙조사 조세불복실무 / 윤창인	동우국세아카데미	2018	
국제조세 실무 /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8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2018	
금융상품과 세법 / 손영철	삼일인포마인	2018	
기술이전 특론: 암묵적 지식과 특허·혁신 / 박검진	法文社	2018	
기업법무 리뷰 v.11-1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8	
기업법연구 v.32-2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8	
노동법포럼, 제12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노동법포럼, 제13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노동법포럼, 제14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노동법포럼, 제15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노동법포럼, 제16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노동법포럼, 제17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노동법포럼, 제18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노동법포럼, 제19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노동법포럼, 제20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노동법포럼, 제21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노동법포럼, 제22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노동법포럼, 제23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제24호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노동정책연구 v.2018-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18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진원사	2018	
미디어와 인격권 v.3-1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7	
미디어와 인격권 v.4-1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8	
법인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8	
법인세의 실무 / 신찬수	삼일인포마인	2018	
부정경쟁방지법과 실무개관 및 지식재산관련이슈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7	
사모투자펀드와 M&A / 윤승환	삼일인포마인	2018	
사용후핵연료론: 정책과 법제 / 함철훈	화산미디어	2018	
사회보장법연구 v.7-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税法 v.2018 / 현암사	玄岩社	2018	
세법의 이해 / 오운	박영사	2018	
소득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2018	
언론과 법 v.17-1 /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2018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v.2017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8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 이강오	삼일인포마인	2018	
외국환거래법 실무 해설집 / 김철수	울곡출판사	2018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 김용재	삼일인포마인	2018	
의료법학 v.19-1 /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2018	
이나우스DB v.2018-8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8	
장애와 고용 v.28-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조세법총론 / 이준봉	삼일인포마인	2018	
조세총서 v.2018-5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8	
조세총서 v.2018-7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8	
종합소득세 실무 / 윤지영	삼일인포마인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 구분풍	삼일인포마인	2018	
지식재산 & 중재 일기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지식재산연구 v.13-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키워드로 바라본 금융법 & 중재법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키워드로 바라본 스포츠법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키워드로 바라본 지식재산법 총론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키워드로 바라본 특허법 & 저작권법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環境紛争調整事例集 v.26 / 한국,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環境部 中央環境紛争調整委員會 事務局	2018	
(ケース別でわかりやすい)定期借地権・借家権課税の実務 / 細川総合パートナーズ	第一法規	2018	
(よくわかる)税法入門 / 三木義一	有斐閣	2018	
(よくわかる)音楽著作権ビジネス. [1]: 基礎編 / 安藤和宏	RittorMusic	2018	
(よくわかる)音楽著作権ビジネス. [2]: 実践編 / 安藤和宏	RittorMusic	2018	
(基本講義)消費者法 / 中田邦博	日本評論社	2018	
(基礎から学べる)金融商品取引法 / 近藤光男	弘文堂	2018	
(法人職員・公務員のための)労働法: 判例編 / 小嶋典明	ジアース教育新社	2018	
(事例でわかる)不動産の売却にかかる譲渡所得の税金 / 武田秀和	税務経理協会	2018	
(詳解)著作権法 / 作花文雄	ぎょうせい	2018	
(新)税法理論: 優しい税法 / 関子善信	成文堂	2018	
(実務がわかる)ハンドブック企業法務 / 吉川達夫	第一法規	2018	
(実務担当者のための)労働法: 課題解決の法的根拠 / 近藤紘司	第一法規	2018	
(裁判例の要点からつかむ)解雇事件の訴訟実務: 解雇事由別 / 東京弁護士会二一会研究部	第一法規	2018	
(裁判例や通達から読み解く)マタニティ・ハラスメント: 引き起こさないための対応実務 / 小山博章	労働開発研究会	2018	
(判例付き)知的財産権六法: 2018 / 角田政芳	三省堂	2018	
「同一労働同一賃金」のすべて / 水町勇一郎	有斐閣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ペットの判例ガイドブック: 事件・事故・取引等のトラブルから刑事事件まで / 渋谷寛	民法研究会	2018	
メディアとICTの知的財産権 / 菅野政孝	共立出版	2018	
建設業の許可の手びき: 新規・更新・追加・変更等 / 建設業許可行政研究会	大成出版社	2018	
建築法規PRO: 図解建築申請法規マニュアル: 2018 / 圖解建築法規研究會	第一法規	2018	
空法 v.59 / 日本空法學會	勁草書房	2018	
金融商品取引法の基礎 / 川村正幸	中央經濟社	2018	
企業法入門 / 龍田節	日本評論社	2018	
金融商品取引法入門 / 黒沼悦郎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8	
労働基準監督署があなたの会社を狙っている / 河野順一	LABO	2018	
労働法 / 水町勇一郎	有斐閣	2018	
労働法 / 野川忍	日本評論社	2018	
獨禁法講義 / 白石忠志	有斐閣	2018	
法人税法入門講義 / 金子友裕	中央經濟社	2018	
税法學 v.2018-1 / 日本税法學會	税法研究所	2018	
外国人雇用の実務 / 近藤秀将	中央經濟社	2018	
優越的地位濫用規制と下請法の解説と分析 / 長澤哲也	商事法務	2018	
日本労働法學會誌 v.131 / 日本労働法學會	總合労働研究所	2018	
子どもの人権をまもるために / 木村草太	晶文社	2018	
子ども家庭福祉論 / 柏女靈峰	誠信書房	2018	
裁量労働制はなぜ危険か: 「働き方改革」の闇 / 今野晴貴	岩波書店	2018	
財政と金融の法的構造 / 中里實	有斐閣	2018	
財政規律の研究: ドイツ憲法上の起債制限 / 石森久広	有信堂	2018	
租税研究 v.2018-6 / 日本租税研究協	日本租税研究協會	2018	
知的財産権訴訟要論: 不正競争・商標編 / 竹田稔	發明推進協會	2018	
知的財産法 / 小泉直樹	弘文堂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知的財産法 / 田中浩之	第一法規	2018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v.50 /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研究センター 北海道大學大学院法學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 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學の國際據点形成事務局 新世代法政策學	北海道大學	2018	
最新重要判例200労働法 / 大内伸哉	弘文堂	2018	
派遣労働契約法の試み: 派遣労働契約の法規制をめぐる日・中・仏の比較法的考察 / 鄒庭雲	日本評論社	2018	
解雇規制を問い直す: 金銭解決の制度設計 / 大内伸哉	有斐閣	2018	
(Das neue) Versicherungsaufsichtsrecht nach Solvency. 2: Eine Einführung für die Praxis / Heukamp, Wessel	C.H.Beck	2016	
(Das) Verbot der Ungleichbehandlung nach Art. 24 Abs. 5 OECD-MA / Geffken, Lennart	Nomos	2017	
(Der)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Unterlassungsanspruch des Arbeitgebers gegen den Betriebsrat / Lukes, Kevin	Duncker & Humblot	2016	
(Die) 9. GWB-Novelle: Kartellschadensersatz, Digitale Ökonomie, Fusionskontrolle, Bußgeldrecht, Verbraucherschutz / Kersting, Christian	C.H.Beck	2017	
(Die) Auslegung privatrechtlich geprägter Begriffe im Ertragsteuerrecht: ein Beitrag zum Verhältnis zweier Teilrechtsordnungen / Vogel, Max	Nomos	2015	
(Die) Besitzgesellschaft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Steuerrecht: ein Beitrag zur Dogmatik von Gewerbebetrieb, Unternehmen und privater Vermögensverwaltung / Neumer, Johannes	Nomos	2017	
(Die) Besteuerung gemeinnütziger und 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 Verein – Stiftung – gGmbH, Regie- und Eigenbetriebe: Handbuch für Beratung und Praxis / Troll, Max	Vahlen	2017	
(Die)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Europäischen Elektrizitätsbinnenmarkt: Binnenmarktintegration erneuerbarer Energien durch Europäisierung nationaler Fördersysteme / Kröger, James	Nomos	2015	
(Die) Haftung des Arztes im Praktischen Jahr aus strafrechtlicher und zivilrechtlicher Perspektive / Ernst, Peter	Nomos	2016	
(Die) Netzanbindung von Windenergieanlagen auf See nach §§ 17 a ff. EnWG: mit der Netzanbindung verbundene Pflichten der Übertragungsnetzbetreiber, Grenzen der Pflicht zur Leitungserrichtung und Rechtsfolgen einer Pflichtverletzung / Antonia, Wetzler	Nomos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ie) Praxis der Bundesauftragsverwaltung: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s Vollzugs des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es / Elmers, Christine	Duncker & Humblot	2015	
(Die) rechtliche Einordnung der EEG-Umlage als Sonderabgabe oder als Preisregelung / Rheker, Marleen	Nomos	2016	
(Die) Vermögensverwaltung im Ertragsteuerrecht: unter besonderer Würdigung der öffentlichen Hand im Körperschaftsteuerrecht / Auerswald, Lydia	Nomos	2016	
30 Klausuren aus dem Individualarbeitsrecht / Oetker, Hartmut	Vahlen	2017	
30 Klausuren aus dem kollektiven Arbeitsrecht / Oetker, Hartmut	Vahlen	2016	
Arbeitsrecht / Waltermann, Raimund	Vahlen	2016	
Arbeitsrecht in der Kirche: staatliches Arbeitsrecht und kirchliches Dienstrecht / Richardi, Reinhard	C.H.Beck	2015	
Arbeitsunfall und Dienstatunfall: zur Reichweite des Unfallschutzes von Arbeitnehmern und Beamten nach § 8 SGB VII und § 31 BeamtVG / Giesen, Gerd	Duncker & Humblot	2017	
Arbeitsvermittlungsgesetz (AVG): Bundesgesetz vom 6. Oktober 1989 über die Arbeitsvermittlung und den Personalverleih / Kull, Michael	Stämpfli	2014	
Bauverzögerung und Leistungsänderung: rechtliche und baubetriebliche Probleme und ihre Lösungen / Vygen, Klaus	Werner	2015	
Beck'sches Mandatshandbuch: Arbeitsrecht in der Insolvenz / Regh, Thomas	C.H.Beck	2015	
Betriebsrentengesetz: Arbeits-, Zivil- und Steuerrecht: Kommentar / Blomeyer, Wolfgang	C.H.Beck	2015	
BUrlG: Kommentar zum Bundesurlaubsgesetz / Powietzka, Arnim	Luchterhand	2017	
Deutsches und europäisches Markenrecht / Sosnitzer, Olaf	C.H.Beck	2015	
Eigentumswohnung: Professionell kaufen, versichern, verwalten, vererben, veräußern etc / Fischl, Agnes	C.H.Beck	2015	
EnEG, EnEV: Energieeinsparungsgesetz, Energieeinsparverordnung: Kommentar / Frenz, Walter	C.H.Beck	2015	
Energie-Infrastrukturrecht: Kolloquium anlässlich der Verabschiedung von Prof. Dr. Wilfried Erbguth am 11. September 2014 / Schlacke, Sabine	Duncker & Humblot	2015	
Energiewende und Finanzkrise als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Europarechts / Korte, Stefan	Duncker & Humblot	2016	
Funktionsverlagerungen zwischen nahe stehenden Personen im Sinne des § 1 AStG: theoretische Grundlagen und empirische Analyse / Greil, Stefan	Duncker & Humblot	2014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Geschichte des deutschen Patentrechts / Otto, Martin	Mohr Siebeck	2015	
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in Landwirtschaftssachen: Kommentar / Selle, Dirk von	C.H.Beck	2017	
Handbuch Bauzeit / Roquette, Andreas J	Werner	2016	
Haushaltsrecht: Vorschriftensammlung / Schuy, Johannes Raack, Wolfgang	C.F. Müller	2017	
Heizkostenverordnung: Verordnung über die verbrauchsabhängige Abrechnung der Heiz- und Warmwasserkosten (Verordnung über Heizkostenabrechnung – HeizkostenV): Kommentar / Lammel, Siegbert	C.H.Beck	2015	
Impulse des Sportrechts / Vieweg, Klaus	Duncker & Humblot	2015	
Internationales und Europäisches Steuerrecht / Haase, Florian	C.F. Müller	2017	
Investitionen und ihre Risiken: zur Lage nicht geschäftsführender Anleger in Unternehmen des Späten Mittelalters und der Frühen Neuzeit in Italien und Deutschland / Butzert, Clemens	Duncker & Humblot	2016	
Investmentrecht: Kapitalanlagegesetzbuch, Investmentsteuergesetz: Handkommentar / Patzner, Andreas	Nomos	2017	
IT-Arbeitsrecht: Digitalisierte Unternehmen: Herausforderungen und Lösungen / Kramer, Stefan	C.H.Beck	2017	
Juris Praxiskommentar: 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Ullmann, Eike	Juris GmbH	2016	
Klimagerechtigkeit und Klimaethik / Kallhoff, Angela	De Gruyter	2015	
Kölner Formularbuch Grundstücksrecht / Heinemann, Jörn	Carl Heymanns	2016	
Kommentar zur HOAI: Gesamtdarstellung zum Architekten- und Ingenieurrecht / Locher, Horst	Werner	2017	
Kommentar zur VOL/B / Goede, Matthias	Werner	2016	
Kommunale Einkommensbesteuerung / Schulte, Bernd	Duncker & Humblot	2014	
Konsolidierung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des Europäischen Umweltrechts / Nowak, Carsten	Nomos	2015	
Kultur im Recht-Recht als Kultur: Tagungsband des Neunten Heidelberger Kunstrechtstags am 30. und 31. Oktober 2015 / Weller, Matthias	Nomos	2016	
Marktintegration erneuerbarer Energien am Beispiel der Direktvermarktungsregelung des EEG 2012 wie auch des EEG 2014 / Lamott, Julien	Nomos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edienrecht / Dörr, Dieter	Müller	2015	
Mensch und Maschine: Symbiose oder Parasitismus? / Brändli, Sandra Universität St. Gallen	Staempfli	2015	
Mindestlohngesetz: kommentar / Riechert, Christian	C.H.Beck	2017	
Öffentliches Finanzrecht / Lienhard, Andreas	Stämpfli	2017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m Übertragungsnetzausbau: Akzeptanzförderung als gesetzgeberisches Leitbild: Umsetzung und Defizit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EN-E-Verordnung Nr. 347/2013 / Stracke, Marius	Nomos	2017	
Pharmaceutical Patent Law / Thomas, John R	Bloomberg BNA	2018	
Pharmaceutical Patent Law: 2018 cumulative supplement / Thomas, John R	Bloomberg BNA	2018	
Praxishandbuch Immobilien-Investitionen / Schäfer, Jürgen	C.H.Beck	2016	
Praxiskommentar HOAI 2013: Das Vergütungsrecht der Architekten und Ingenieure: Kommentar / Steeger, Frank	Kohlhammer	2016	
Raumplanungs-, Bau- und Umweltrecht: Entwicklungen 2014/15 / Stalder, Beat	Stämpfli	2016	
Rechtsfragen der gemeinsamen Einrichtungen / Strippelmann, Hagen	Duncker & Humblot	2016	
Rechtsfragen der Windkraft zu Lande und zur See / Brinktrine, Ralf	Duncker & Humblot	2016	
Rechtsgüter und Verhältnismäßigkeit im Strafrecht des geistigen Eigentums / Pfaffinger, Sabrina	Mohr Siebeck	2015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9 / Germany Bundesfinanzhofs	Stollfuss Medien	2018	
Sichere Energieversorgung im europäischen Mehrebenensystem: eine rechtlich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olidaritätsprinzips / Roth, Bettina	Nomos	2016	
Single common market organisation: article-by-article commentary of the legal framework for agricultural markets in the European Union / Møgele, Rudolf	Beck	2015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Lehr- und Praxiskommentar / Münder, Johannes	Nomos	2015	
Sports Law: present and future / Yeun, Kee-Young	책연	2018	
Systemaufsicht: Anforderungen an die Ausgestaltung einer Aufsicht zur Abwehr systemischer Risiken entwickelt am Beispiel der Finanzaufsicht / Kaufhold, Ann-Katrin	Mohr Siebeck	2016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Kommentar / Meinel, Gernod	C.H.Beck	2015	
Transparenzpflichten zur Kontrolle von Finanzdienstleistungsunternehm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chutzes von Geschäftsgeheimnissen / Rudkowski, Lena	Mohr Siebeck	2016	
Umwelt- und zukunftsverträgliche Entscheidungsfindung des Staates: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Umweltschutz, dessen Stand bei Interessenkonflikten, die gerechte Durchsetzung mittels gesteuerter Abwägung und das Potential der wissenschaftlichen Politikberatung / Hahn, Henry	Mohr Siebeck	2017	
UWG: Handkommentar / Götting, Horst-Peter	Nomos	2016	
Wasser Energie Verkehr: Vergaberecht für Praktiker: Eine Einführung anhand von Fällen / Schütte, Dieter B	Kohlhammer	2016	
Ziele und Grundsätze der Raumordnung: Eine rechtstheoretische Untersuchung zur Abgrenzung und Abgrenzbarkeit / Snowadsky, Michael	Nomos	2016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U란 무엇인가 / 中村民雄	박영사	2018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 박기정	자유미디어	20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v.49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8	
國際法務 v.10-1 /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研究所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研究所	2018	
국제법평론 v.50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8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 / 김명기	선인	2018	
로스쿨 국제거래법 / 안강현	박영사	2018	
서울국제법연구 v.25-1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2018	
중재연구 v.27-2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28-2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国别でわかる!)海外信託による相続の税務&法務 / 海外信託税務研究会	第一法規	2018	
(事例で解く)國際取引訴訟: 國際取引法・國際私法・國際民事訴訟法への総合アプローチ / 大塚章男	日本評論社	2018	
國際ビジネス法務: 貿易取引から英文契約書まで / 吉川達夫	第一法規	2018	
國際法遵守の管理モデル: 新しい主権のありかた / Chayes, Abram	中央大學出版部	2018	
國際弁護士が教える海外進出やっていいこと'ダメなこと / 絹川恭久	第一法規	2018	
國際私法年報 v.19 / 國際私法學會	信山社	2018	
國際的難民保護と負担分担: 新たな難民政策の可能性を求めて / 杉木明子	法律文化社	2018	
國際責任の履行における賠償の研究 / 大森正仁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18	
基本國際法 / 杉原高嶺	有斐閣	2018	
世界法年報 v.37 / 世界法學會	世界法學會	2018	
現代國際刑事法: 国内刑事法との協働を中心として / 城祐一郎	成文堂	2018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Staatenimmunität, diplomatischer Immunität und Menschenrechten: eine Analyse am Beispiel des Rechtsschutzes für ausgebeutetes Hauspersonal von Diplomaten, Botschaften und ständigen Missionen im Gaststaat Schweiz / Baldegger, Mirjam	Helbing Lichtenhahn	2015	
(Die) Wirkungen der Urteile des EuGH in der Zeit: ein Beitrag zur Problematik der zeitlichen Beschränkung von Urteilswirkungen durch den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 Wusterhausen, Uwe	Nomos	2016	
(The)international lawyer v.2018-2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8	
Ausländer und Asylrecht: Einführung / Dietz, Andreas	Nomos	2017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50-3 /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Cornell University	2017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1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8	
EMRK: Handkommentar / Meyer-Ladewig, Jens	Nomos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uropäisches Meeresumweltrecht im Internationalen Mehrebenensystem : Grenzen und Möglichkeiten eines europäischen Meeresumweltrechts am Beispiel europäischer und internationaler Vorgaben zur Eindämmung von Schiffsemissionen / Solf, Katarina	Nomos	2017	
European law review v.2018-1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8	
European law review v.2018-2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8	
European law review v.2018-3 / Arnull, Anthony White, Robin C.A	Sweet & Maxwell	2018	
Flucht, Asyl und Integration aus rechtlicher Perspektive / Haedrich, Martina	Mohr Siebeck	2017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7-3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8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unter Einbezug der inter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Entwicklungen 2014 / Kostkiewicz Kren, Jolanta	Staempfli	2015	
Internationales Zivilverfahrensrecht: mit internationalem Insolvenz- und Schiedsverfahrensrecht: ein Studienbuch / Schack, Haimo	C.H. Beck	2017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11-1 / Yiju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Yijun Press	2018	
Migration und Integration: Die Migrationskrise als Herausforderung des Rechts / Uhle, Arnd	Duncker & Humblot	2017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 Werle, Gerha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82-1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Mohr	2018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82-2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Mohr	2018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v.82-3 /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Mohr	2018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8-1 / Lagarde, Paul, Dalloz	Dalloz	2018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8-1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8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v.2018-2 / A. Piler, P. Fauchille, A. Pedone	Pedone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8-1 / Desurmont, Thierry, Gsubisc, Yves, Kerever, Andre, Henry Lemoine	Henry Lemoine	20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8-1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8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8-2 / Jacqué, Jean-Paul, Prieto, Catherine, Sibony, Anne-Lise, Dalloz Sirey	Dalloz	2018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54-2 /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Völkerrechtsgeschichte(n): Historische Narrative und Konzepte im Wandel / Arnould, Andreas von	Duncker & Humblot	2017	
Wirtschaftsvölkerstrafrecht: Ursprünge, Begriff, Praxis, Perspektiven / Jeßberger, Florian	Nomos	2015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v.2017-4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7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v.2018-2 / Basedow, Jürgen, Blaurock, Uwe, Kieninger, Eva Maria, Schulze, Reiner, Wagner, Gerhard, Zimmermann, Reinhard	C.H.Beck	2018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 2010.10.~2017.1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만화로 보는) 헌재결정. 제4권: 2017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8	
公法研究 v.46-4 / 한국공법학회	韓國公法學會	2018	
누워서 읽는 법학: 공법 (헌법·행정법) / 김해마루	로스타트	2018	
여성과 인권 v.2018-1 /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8	
연간보고서 v.2017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연차보고서 v.2017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8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v.16 /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절차 개선 연구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서울지방법변호사회	2018	
헌법재판연구 v.5-1 /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2018	
헌법학 논집 / 성낙인	법문사	2018	
憲法學研究 v.24-2 / 한국헌법학회	韓國憲法學會	2018	
「国家と法」の主要問題 / 辻村みよ子	日本評論社	2018	
「自己決定権」の構造 / 上田宏和	成文堂	2018	
アメリカ憲法入門 / 松井茂記	有斐閣	2018	
個人情報管理ハンドブック / TMI総合法律事務所	商事法務	2018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 藤原静雄	ぎょうせい	2018	
比較憲法 / 辻村 みよ子	岩波書店	2018	
精読憲法判例: 人權編 / 木下昌彦	弘文堂	2018	
憲法判例 / 戸松秀典	有斐閣	2018	
(Das) Gleichbehandlungsverbot im Unionsrecht / Fuchs, Tobias	Duncker & Humblot	2015	
(Das) Streikverbot für verbeamtete Lehrer: eine Analys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 Pollin, Ulrike	Nomos	2015	
(Das) Verständigun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ie Notwendigkeit von Reformen im Strafprozess / Rabe, Patricia	Mohr	2017	
(Der) Grundrechtsföderalismus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eine Darstellung vor dem Hintergrund der Debatte um die Bindung der Mitgliedstaaten an die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 Dombert, Maximilian	Nomos	2017	
(Die) Prognose im Staatsrecht: Zukunft in Vergegenwärtigung / Leisner, Walter	Duncker & Humblot	2015	
(The) Rise and Growth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Historical Documents with Editor' s Comments / Shin, Woocheol	MUNU	2018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v.143-1 / J.C.B.Mohr	J.C.B.Mohr	2018	
Big Data: Ende des Datenschutzes?: Gedächtnisschrift für Martin Usteri / Boehme-Nessler, Volker	Stämpfli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Biometrische Daten als Gegenstand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 Blonski, Dominika	Stämpfli	2015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Handkommentar / Lenz, Christofer	Nomos	2015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texte intégral présenté par Ferdinand Mélin-Soucramanien: 2018 / france	Dalloz	201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016 / Korea,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7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3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4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8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5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2018	
Grundgesetz: Kommentar / Sachs, Michael	C.H.Beck	2018	
Grundkurs Öffentliches Recht. Teil: 1: Grundlagen, Staatsstrukturprinzipien, Staatsorgane und -funktionen / Papier, HansJürgen	C.F. Müller	2015	
Grundkurs Öffentliches Recht. Teil: 2: Grundrechte / Papier, HansJürgen	C.F. Müller	2015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KritV) v.101-1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8	
Menschenrechtsschutz für juristische Personen in Deutschland, der Schweiz und den Vereinigten Staaten: Begründungsmodelle der korporativen Menschenrechtsträgerschaft / Baldegger, Mirjam	Duncker & Humblot	2017	
Netzneutralität des Grundgesetzes / Ziebarth, Lennart	Nomos	2016	
Public law v.2018-3 / Sweet & Maxwell Sweet and Maxwell	Sweet & Maxwell	2018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v.113 / Puf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uf	2018	
Staatsrecht: systematische Erläuterung des Grund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adura, Peter	C.H. Beck	2015	
Verfassungsprozessrecht / Fleury, Roland	Vahlen	2015	
Verfassungsprozessrecht / Hillgruber, Christian	Müller	2015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s. Willkürverbot: der Streit um den allgemeinen Gleichheitssatz / Machado, Gabriel D. L	Duncker & Humblot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8-1 / C.F.Müller	C.F.Müller	2018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ZG v.2018-2 / C.F.Müller	C.F.Müller	2018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학연구 v.54 / 경찰학연구 편집위원회	경찰대학	2018	
中国 公务员报酬法 / 명연	世宗	2017	
지방자치론 / 임승빈	法文社	2017	
地方自治法研究 v.58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8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18	
行政法の 特殊問題 / 정남철	法文社	2018	
(2017年)地方公務員法改正: 会計年度任用職員制度の導入等に向けた実務 / 地方公務員法研究会	第一法規	2018	
(ケーススタディ)行政不服審査法: 自治体における審査請求実務の手引き / 中村健人	第一法規	2018	
(ケースで学ぶ)立法事実: 条例づくりのきほん / 田中孝男	第一法規	2018	
(ケースブック)行政法 / 稲葉馨	弘文堂	2018	
(これで完璧)地方自治法250問 / 地方公務員昇任試験問題研究会	學陽書房	2018	
(リーガルマインドが身につく)自治体行政法入門 / 北村喜宣	ぎょうせい	2018	
(實務)住民訴訟 / 伴義聖	ぎょうせい	2018	
(自治体職員のためのようこそ)地方自治法 / 板垣勝彦	第一法規	2018	
建築消防advice: 2018 / 建築消防実務研究会	新日本法規	2018	
公共政策を学ぶための行政法入門 / 深澤龍一郎	法律文化社	2018	
基本行政法 / 中原茂樹	日本評論社	2018	
自治体政策法務講義 / 磯崎初仁	第一法規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自治法基本解説 / 川崎政司	法學書院	2018	
行政法 / 宇賀克也	有斐閣	2018	
行政法, 2: 現代行政救濟論 / 大橋洋一	有斐閣	2018	
行政法概説, 2: 行政救濟法 / 宇賀克也	有斐閣	2018	
行政法理論と憲法 / 中川義朗	法律文化社	2018	
行政上の主体と行政法 / 北島周作	弘文堂	2018	
行政情報の法理論 / 村上裕章	有斐閣	2018	
(Das neue) Hochwasserschutzrecht in Deutschland: eine Untersuchung der Implementierung des unionsrechtlichen Hochwasserrisikomanagements in das Hochwasserrecht des Wasserhaushaltsgesetzes / Dohmen, Alexander	Heymanns	2014	
(Das) Recht am öffentlichen Raum: Theorie des öffentlichen Raumes und die räumliche Dimension von Freiheit / Siehr, Angelika	Mohr Siebeck	2016	
Administrative law review v.70-1 /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2018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Grundlagen des deutschen, europäischen und internationalen öffentlichen Wirtschaftsrechts / Stober, Rolf	Kohlhammer	2015	
Beamtenrecht / Schmidt, Thorsten Ingo	Mohr Siebeck	2017	
Bundesbeamtengesetz: Kommentar / Battis, Ulrich	C.H.Beck	2017	
Handbuch Verwaltungsrecht / Terwiesche, Michael	Heymanns	2018	
Nachhaltigkeit durch Organisation und Verfahren / Kahl, Wolfgang	Mohr Siebeck	2016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À l'Étranger v.2018-2 / L.G.D.J	L.G.D.J	2018	
Revue du droit public: et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 et À l'Étranger v.2018-3 / L.G.D.J	L.G.D.J	2018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8-2 / Dalloz	Dalloz	2018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8-3 / Dalloz	Dalloz	2018	
Verwaltungsprozessrecht / Gersdorf, Hubertus	Müller	2015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학 교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핸드북 / 홍완식	마인드맵	2018	
矯正研究 v.79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2018	
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 I: 형사법의 기초 / 김해마루	로스타트	2018	
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 II: 응용과 적용 / 김해마루	로스타트	2018	
청소년 관련법규 / 헤민북스 편집부	헤민북스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59 /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대검찰청	2018	
刑事政策研究 v.114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韓國刑事政策研究院	2018	
米國刑事判例の動向: 合衆國最高裁判所判決, 6 / 渥美東洋	中央大學出版部	2018	
未遂犯論の諸問題 / 原口伸夫	成文堂	2018	
詐欺罪の保護法益論 / 足立友子	弘文堂	2018	
(実務のための)輕犯罪法解説 / 井阪博	東京法令出版	2018	
(入門)刑法學·各論 / 井田良	有斐閣	2018	
裁判員裁判と刑法 / 松澤伸	成文堂	2018	
判例刑法各論 / 西田典之	有斐閣	2018	
判例刑法總論 / 西田典之	有斐閣	2018	
刑法 / 木村光江	東京大学出版会	2018	
刑法各論 / 西田典之	弘文堂	2018	
(Das) Körperschaftsdelikt / Schirmer, Jan-Erik	Mohr Siebeck	2015	
(Das) US-amerikanische Strafrechtssystem als Modell für die vertikale Kompetenzverteilung im Strafrechtssystem der EU? / Neumann, Laura Katharina Sophia	Nomos	2014	
(Das) Verwaltungsstrafrecht im Wandel: Herausforderung für die Strafverfolgung und Strafverteidigung / Eicker, Andreas	Stämpfli	2017	
32 Probleme aus dem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Hillenkamp, Thomas	Vahlen	2017	
Jugendstrafrecht / Ostendorf, Heribert	Nomos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2018-1 / Dalloz Centre francais de droit comparé droit comparéde Paris Centre de droit Pénal comparé Institut de droit comparé Institut de criminologie	Dalloz	2018	
Strafrecht Besonderer Teil: Lehrbuch zum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Kleszczewski, Diethelm	Mohr Siebeck	2016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Seelmann, Kurt	Helbing Lichtenhahn	2016	
Wirtschaftsstrafrecht / Wittig, Petra	C.H.Beck	2017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29-4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7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v.130-1 / Walter Gruyter Verlag	Walter Gruyter	2018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M&A, DCF, PPA, 자산손상, 세법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와 재무실사 / 이중욱	삼일인포마인	2018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선 / 박길동	삼일인포마인	2018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I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미국 회사법과 계약법 / 배성현	파랑새미디어	2014	
保險法研究 v.12-1 / 韓國保險法學會	韓國保險法學會	2018	
상법개론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18	
상법기본강의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18	
商事法研究 v.37-1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8	
商事判例研究 v.31-2 / 한국상사판례학회	韓國商事判例學會	2018	
키워드로 바라본 회사법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 / 권재열	마인드탭(Mind Tab)	2017	
韓國海法學會誌 v.40-1 / 한국해법학회	韓國海法學會	2018	
海上交通法 / 김인현	삼우사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海商法 / 김인현	法文社	2018	
(實務解説)特定商取引法 / 上柳敏郎	商事法務	2018	
M&A契約: モデル条項と解説 / 戸嶋浩二	商事法務	2018	
機關投資家の議決權行使方針及び結果の分析: 平成30年版 / 商事法務	商事法務	2018	
社債の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 財務危機における社債権者の意思決定に係る法的規律 / 行岡睦彦	有斐閣	2018	
商法總論·会社法總則 / 畠田公明	中央經濟社	2018	
商法總則·商行為法 / 近藤光男	有斐閣	2018	
新株予約權ハンドブック / 太田洋	商事法務	2018	
会社法 / 高橋美加	弘文堂	2018	
会社法 / 神田秀樹	弘文堂	2018	
会社法 / 伊藤靖史	有斐閣	2018	
(Das) Europäische Wirtschaftsrecht vor neuen Herausforderungen: Beiträge aus Deutschland und Griechenland / Hopt, Klaus J	Mohr Siebeck	2015	
Aktuelle Probleme des Luftverkehrs, Planfeststellungs und Umweltrechts 2014: Vorträge auf den Sechzehnten Speyerer Planungsrechtstagen und dem Speyerer Luftverkehrsrechtstag vom 5. bis 7. März 2014 an der Deutschen Universität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 Ziekow, Jan	Duncker & Humblot	2015	
Compliance für Wirtschaftsverbände / Pischel, Gerhard	C.H.Beck	2017	
Gesellschaftsrecht: [mit Fällen und Übersichten] / Schäfer, Carsten	Beck	2015	
Haftpflcht- und Privatversicherungsrecht: [Entwicklungen 2016] / Biaggi, Raffaella	Staempfli Verlag	2017	
Handbuch Joint Venture / Fett, Torsten	Müller	2015	
Inkasso-Handbuch: Recht und Praxis des Inkassowesens / Seitz, Walter	C.H.Beck	2015	
Internal Investigations: Ermittlungen im Unternehmen / Knierim, Thomas C	C.F. Müller	2016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8-4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8	
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8-5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8-2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8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d.3: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Priester, Hans-Joachim Mayer, Dieter Wicke, Hartmut	C. H. Beck	2018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d.8: Umwandlungsrecht, Gesellschaftsrecht, Insolvenzrecht, Steuerrecht, Bilanzrecht, Arbeitsrecht, Kartellrecht, Öffentliches Recht / Lieder, Jan Wilk, Cornelius Ghassemi-Tabar, Nima	C.H. 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3: §§ 118-178 / Kropff, Bruno	C.H. Beck	2018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6: §§ 329-410, WpÜG, Österreichisches Übernahmerecht / Kropff, Bruno	C.H.Beck	2017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Einführung / Knauff, Matthias	UTB	2015	
Recht des Seeverkehrs: Flaggenrechtsgesetz, Seeaufgabengesetz, Schiffssicherheitsgesetz, Seelotsgesetz, Seesicherheits-Untersuchungsgesetz: Handkommentar / Ehlers, Peter	Nomos	2017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8-1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8	
Schemes of Arrangement: theory, structure and operation / Payne, Jenni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EGVVG, VVG-InfoV, AltzertG, PflVG, KfzPflVV: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 ; Handkommentar / Rüffer, Wilfried	Nomos	2015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182-3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8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8) 국민과의 소통: 모범사례 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2018년)연론과 사법 심포지엄 / 한국. 대법원	대법원	2018	
가사소송법상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사소송실무대전: 친족·후견·부양·상속·국제가사. (하) / 김현선	로복스	2018	
가사소송실무대전: 혼인·이혼·양육·친권. (상) / 김현선	로복스	2018	
군사재판實務 / 한국, 해군본부 군사법원	해군본부 군사법원	2018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신축에 따른 이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 넷아스기술	법원행정처	2018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신축에 따른 이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요약본 / 넷아스기술	법원행정처	2018	
도산법연구 v.7-2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7	
도산법연구 v.7-3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7	
동아시아 도산재건 심포지움: 심포지움 논문집, 제6회 /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	2014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쟁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참여연대자료집(2018. 05. 1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	
민법법인등기실무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민변 30년: 인권과 민주주의의 한길로 /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	궁리	2018	
법조윤리강의: 기본이론·문제해설 / 정형근	박영사	2018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편람 / 유재복	법률정보센터	2018	
사법 v.44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8	
상업등기실무 / 김상균	삼일인포마인	2018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요약본): 소년사법관련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7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소년사법관련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7	
재판실무편람, 제26호: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8	
특허법원의 변화와 미래 전략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법원행정처	2018	
(実践)訴訟戦術: 離婚事件編: 弁護士はここで悩んでいる / 東京弁護士会春秋会	民事法研究会	2018	
倒産處理法入門 / 山本和彦	有斐閣	2018	
離婚マニュアル: 円満離婚のススメ / 白井可菜子	啓文社書房	2018	
裁判員時代の法リテラシー: 法情報・法教育の理論と実践 / 土山希美枝	日本評論社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 Insolvenzplan: Handbuch für das Sanierungsverfahren gemäß §§ 217 bis 269 InsO mit praktischen Beispielen und Musterverfügungen / Smid, Stefan	Kohlhammer	2015	
(Die) kalte Zwangsverwaltung / Fleisch, Johann-Friedrich	Heymanns	2017	
(Die) Struktur des Insolvenzrechts in der BGH-Rechtsprechung: 2012 - 2014 / Smid, Stefan	De Gruyter	2016	
Annual report v.2017 / Supreme Court of Pakistan	Supreme Court of Pakistan	2017	
Antworten für die Praxis: Insolvenz und Arbeitsrecht: Arbeitspflicht/Gehalt, Rolle des Verwalters, Betriebsschließung/-übergang / Hintz, Erik	Vahlen	2016	
Bauinsolvenzrecht: Grundlagen, Rechtsschutz, Forderungsdurchsetzung / Matthies, Stefan	C.H.Beck	2015	
Beurkundungsgesetz: Kommentar / Winkler, Karl	C.H.Beck	2017	
Bundesrechtsanwaltsordnung: mit Berufs- und Fachanwaltsordnung: Kommentar / Kleine-Cosack, Michael	C.H.Beck	2015	
Chefsache Mandantenakquisition: Erfolgreiche Akquisestrategien für Anwälte / Busmann, Johanna	De Gruyter	2017	
Comparative Insolvency Law: The Pre-pack Approach in Corporate Rescue / Xie, Bo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Forderungen in der Insolvenz: Anmeldung - Feststellung - Tabellenfeststellungsstreit / Smid, Stefan	De Gruyter	2017	
Handbuch Insolvenzplan in Eigenverwaltung / Silcher, Erik	Carl Heymanns	2017	
Handbuch Insolvenzrecht / Lissner, Stefan	Kohlhammer	2016	
InsVV, GKG, RVG: Vergütung und Kosten in der Insolvenz / Lorenz, Karl-Heinrich	Luchterhand	2017	
Jugendgerichtsgesetz: mit Jugendstrafvollzugsgesetzen / Diemer, Herbert	C.F.Müller	2015	
Kreditsicherheiten in der Insolvenz: Handbuch / Smid, Stefan	Kohlhammer	2015	
Opferentschädigungsgesetz: Gesetz über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kommentar / Gelhausen, Reinhard	C.H.Beck	2015	
Planungsrecht im Vergleich: Deutschland - Japan / Zufall, Frederike	Nomos	2016	
Praxis der Teilungsversteigerung: Leitfaden für Beteiligte, deren Rechtsanwälte und Rechtspfleger / Storz, Karl-Alfred	C.H.Beck	2016	
Praxishandbuch Privatinsolvenz / Frind, Frank	C.H.Beck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cht der alternativen Konfliktlösung: Mediationsgesetz, Verbraucherstreitbeilegungsgesetz: Kommentar / Greger, Reinhard	C.H.Beck	2016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Kommentar / Hartung, Wolfgang	C.H.Beck	2017	
Registerrecht / Keidel, Theodor	C.H. Beck	2017	
Strafprozessrecht: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trafverfahrensrechts / Kühne, Hans-Heiner	C.F.Müller	2015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9-2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8	
Zwangsversteigerung und zwangsverwaltung: der Vollstreckungsablauf von der Verfahrensordnung bis zur Erlösverteilung / Knees, Klaus-Nlaus	De Gruyter Recht	2017	
Zwangsvollstreckung: für Anfänger / Damm, Maximilian	C.H.Beck	2017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民事訴訟: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22-1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新)民事訴訟法講義 / 中野貞一郎	有斐閣	2018	
(裁判官が説く)民事裁判実務の重要論点: 基本原則権利の濫用編 / 加藤新太郎	第一法規	2018	
民事訴訟法 / 山本弘	有斐閣	2018	
民事訴訟法 / 安西明子	有斐閣	2018	
民事訴訟法の理論: 高橋宏志先生古稀祝賀論文集 / 高田裕成	有斐閣	2018	
民事裁判と専門訴訟: 裁判官の視点 / 門口正人	商事法務	2018	
要件事實論30講 / 村田涉	弘文堂	2018	
Berufung im Zivilprozess / Eichele, Karl	Luchterhand	2017	
Erfolgreiche Taktik im Zivilprozess / Prechtel, Günter	Luchtrrerhand	2017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d. 3: §§ 946-1117 : EGZPO, GVG, EGGVG, UKlaG, Internationales und Europäisches Zivilprozessrecht / Lüke, Gerhard	C.H. Beck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chtsdienstleistungsgesetz: Rechtsdienstleistungsverordnung und Einführungsgesetz zum RDG: Kommentar / Deckenbrock, Christian	C.H.Beck	2015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ZZP v.131-2 / Carl Heymanns Verlag	Carl Heymanns Verlag	2018	
Zivilprozessordnung: Kommentiertes Prozessformularbuch: Mit Familienverfahren und ZVG / Saenger, Ingo	Nomos	2016	
ZPO: Kommentar: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Gehri, Myriam A	Orell Füssli	2016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ケースブック)刑事訴訟法 / 井上正仁	有斐閣	2018	
刑事訴訟法講義 / 池田修	東京大學出版會	2018	
(Das) Arbeitsrecht der Bühne / Ganß, Hanskarl	De Gruyter	2015	
(Das) Geständnis / Sickor, Jens Andreas	Mohr Siebeck	2014	
(Die) Nebenfolge im System strafrechtlicher Sanktionen: eine Untersuchung zur Dogmatik der Nebenfolge sowie zur Einordnung von Normen als Nebenfolge / Sobota, Sebastian	Duncker & Humblot	2015	
30 Probleme aus dem Strafprozessrecht / Rössner, Dieter	Franz Vahlen	2017	
Strafprozessrecht / Schroeder, Friedrich-Christian	C.H.Beck	2017	
Thesen zur Strafverteidigung / Strafrechtausschuss der Bundesrechtsanwaltskammer	C.H. Beck	2015	
Untersuchungshaft: mit Erläuterungen zu den UVollzG der Länder / Schothauer, Reinhold	C.F. Müller	2016	
Verhör, Vernehmung, Befragung: zu Geschichte und Dogmatik des Rechtsbegriffs der Vernehmung im Strafprozess und seiner Auflösung im 20. Jahrhundert / Schumann, Antje	Mohr Siebeck	2016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김상훈	세창출판사	2018	
(Praxis) 민법 입문: Case 중심 민법총칙과 채권법. 1 / 조상희	한국학술정보	2018	
(Upgrade)부동산 등기법: 판례·예규·선례 총정리 / 유석주	삼조사	2018	
(사례로 보는) 중증소송 이야기 / 김예림	솔트라인	2018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 쉽게하는 법 / 김만기	법문북스	2018	
공탁실무사례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 독일	박영사	2018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V / 한국등기법학회	한양당	2018	
부동산등기소송정해 / 최돈호	법문북스	2018	
不動産登記實務大典. (상):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 변강립	백영사	2018	
不動産登記實務大典. (중): 소유권이전·이외의 등기 / 변강립	백영사	2018	
不動産登記實務大典. (하):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 / 변강립	白映社	2018	
사단(社團) 재단(財團)·비영리·공익법인의 절차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8	
신탁법 / 최수정	박영사	2016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 최세영	삼일인포마인	2018	
외국 혼인관계증명서 사례집. 2018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8	
유럽계약법 원칙: 제1·2부 / Lando, Ole	박영사	2018	
유언대용신탁과 등기실무: 재산상속의 새로운 개념 / 이남우	법률지식	2018	
集合建物法學 v.17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集合建物法學 v.18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集合建物法學 v.19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集合建物法學 v.22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集合建物法學 v.23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集合建物法學 v.24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集合建物法學 v.25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集合建物法學 v.26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집합건물의 분양·관리상 법적 쟁점 / 김남근	진원사	2018	
판례 신탁법 / 전경준	진원사	2018	
(金融法務対策速習)新債權法 / 渡邊雅之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18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ル)民法: 総則·物權·債權 / 我妻榮	日本評論社	2018	
(親族を代表して、) 成年後見のしくみについて専門家に聞いてきました / 小林禎周	日本実業出版社	2018	
家族と倒産の未来を拓く: 木内道祥先生古稀・最高裁判事退官記念論文集 / 松川正毅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家族信託をもちいた財産の管理・承継 / 浅岡 輝彦	清文社	2018	
權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權利擁護と成年後見・民法総論 / 福祉臨床シリーズ編集委員会	弘文堂	2018	
民法 / 我妻榮	勁草書房	2018	
民法, 1: 総則 / 佐久間毅	有斐閣	2018	
民法: 親族・相続 / 松川正毅	有斐閣	2018	
民法入門・総則 / 永田眞三郎	有斐閣	2018	
不法行為法: 民法を学ぶ / 窪田充見	有斐閣	2018	
事業再生と債權管理 v.161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成年後見制度の闇 / 長谷川学	飛鳥新社	2018	
身内が亡くなってからでは遅い「相続放棄」が分かる本 / 椎葉基史	ポプラ社	2018	
要件事實民法, 3: 担保物權 / 大江忠	第一法規	2018	
遺贈寄付: 最期のお金の活かし方 / 星野哲	幻冬舎	2018	
医師民事責任の構造と立証責任 / 平野哲郎	日本評論社	2018	
離婚後の子の監護と面会交流: 子どもの心身の健康な発達のために / 梶村太市	日本評論社	2018	
債權法改正とローン契約 / 樋口孝夫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判例INDEX: 侵害態様別に見る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侵害300判例の慰謝料 算定 / 第一法規「判例体系」編集部	第一法規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 bereicherungsrechtliche Ausgleich bei Leistungsketten / Sieber, Lorenz	Stämpfli	2015	
40 Jahre Familienrechtsreform / Götz, Isabell	C.H.Beck	2017	
Aktuelle Fragen des Medizinstrafrechts / Kudlich, Hans	Nomos	2017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218-1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Mohr Siebeck	2018	
BGB Allgemeiner Teil / Grigoleit, Hans Christoph	Beck	2015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 Generalregister v.201-210 / Germany Bundesgerichtshof	Carl Heymanns	2018	
EuErbVO: Kommentar zur EU-Erbrechtsverordnung / Deixler-Hübner, Astrid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2015	
Europäische Erbrechtsverordnung: Internationales Erbrechtsverfahrensgesetz: Kommentar zur Verordnung (EU) Nr. 650/2012 (EuErbVO) / Döbereiner, Christoph	C.H.Beck	2016	
FamFG: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Haußleiter, Martin	C.H.Beck	2017	
Familiengerichtliches Verfahren: Kommentar, 1. und 2. Buch / Musielak, Hans-Joachim	Vahlen	2015	
Familienpsychologische Gutachten: rechtliche Vorgaben und sachverständiges Vorgehen / Salzgeber, Joseph	C.H.Beck	2015	
Familienstiftung und Nachfolgegestaltung: Deutschland, Österreich, Schweiz, Liechtenstein / Löwe, Christian von	C.H.Beck	2016	
Formularbuch des Fachanwalts Erbrecht / Frieser, Andreas	Luchterhand	2017	
Formularbuch für Sportverträge: Vereine und Gesellschaften, Dienst- und Arbeitsverhältnisse, Sportanlagen, Sportdienstleistungen, Veranstaltungen, Werbung und Sponsoring / Partikel, Andrea M	C.H.Beck	2015	
Gläubigerschädigung / Popp, Andreas	Mohr Siebeck	2014	
Grundlagenfälle zum BGB für Fortgeschrittene: Die Wilhelm-Busch-Fälle: 15 Fälle mit Lösungen zum Bürgerlichen Vermögensrecht / Martinek, Michael	C.H.Beck	2017	
Handbuch der Rechtspraxis Familienrecht, Bd. 5a: 1.halbband : Familiensachen / Firsching, Karl	C.H.Beck	2015	
Handbuch der Rechtspraxis Familienrecht, Bd. 5b: 2.halbband : Betreuungssachen und andere Gebiete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Firsching, Karl	C.H.Beck	2015	
Handbuch der Testamentsvollstreckung / Bengel, Manfred	C.H. Beck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Handbuch des Fachanwalts: Familienrecht / Gerhardt, Peter	Luchterhand	2015	
How to Talk to your Kids about your Divorce / Rodman, Samantha	Adams Media	2015	
Immobilienkaufverträge in der Praxis: Gestaltung, Besteuerung, Muster / Krauß, Hans-Frieder	Carl Heymanns	2017	
Münchener Vertragshandbuch, Bd.4: Wirtschaftsrecht III / Schütze, Rolf A Weipert, Lutz Rieder, Markus S	C. H. Beck	2018	
Niedersächsisches Nachbarrechtsgesetz: (NNachbG): Kommentar / Schäfer, Heinrich	C.H.Beck	2015	
Praxishandbuch Gewerberaummierte: Tipps und Tools für Vermieter und Rechtsanwälte / Fritzsche, Michael	De Gruyter	2015	
Praxishandbuch Gläubigerausschuss: Einsetzung, Aufgaben und Pflichten, Haftung / Göb, Marc Alexander	C.H.Beck	2016	
Registerband: Partner im Gespräch von 1976-2015 / ESWid	C.H.Beck	201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8-1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8	
Schuldrecht Besonderer Teil: Eine Einführung mit Fällen / Förster, Christian	Müller	2016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 Looschelders, Dirk	Vahlen	2017	
Standardvertragsmuster zum Gesellschaftsrecht: Deutsch-Englisch: Handelsregisteranmeldungen, Vertriebsverträge, Gesellschaftsverträge, Schiedsgerichtswesen / Stummel, Dieter	C.H.Beck	2015	
Standardvertragsmuster zum Gesellschaftsrecht: Deutsch-Spanisch / Otto, Andreas	C.H.Beck	2016	
Talking to Children About Divorce: A Parent's Guide to Healthy Communication at Each Stage of Divorce / McBride, Jean	Althea Press	2016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bkürzungsverzeichnis der Rechtssprache / Kirchner, Hildebert	De Gruyter	2015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1-200, ALR Fed 2d, vols. 1-94, ALR Fed 3d, vols. 1-28: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Publishing Company	Thomson Reuters	2018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7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28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2018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대학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 / 정재영	경인문화사	2018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9-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9-2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8	
Law library journal v.110-1 /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Westgroup	2018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찰백서 v.2018 / 경찰청	경찰청 (내무부 치안본부)	2018	
공공조직론 / 진중순	법문사	2017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 김춘순	동연	2018	
國民年金統計年報 v.30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18	
國防研究 v.61-2 /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2018	
비교경찰제도론 / 신현기	法文社	2018	
아시아여성연구 v.57-1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2018	
연차보고서 v.2017 / 감사원, 감사연구원	감사원	2018	
통일정책연구 v.27-1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8	
한국관료제 / 박천오	법문사	2018	
한국아동복지학 v.62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8	
한국정부론 / 이대희	法文社	2018	
韓國行政研究 v.27-2 / 한국행정연구원	韓國行政研究院	2018	
行政論叢 v.56-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2018	
행정학 개론 / 제갈돈	법문사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23-1 / Rs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2018	

[문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제21회 / 인사혁신처	U&I문화정보	2018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韓國史研究彙報 v.180 · 181 / 국사편찬위원회	國史編纂委員會	2018	

• 정기간행물 목록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LAW & TECHNOLOGY 14권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21	(주)리걸타임즈	월간
3	고시계 738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4	공법연구 46집 4호	한국공법학회	계간
5	노동법률 2018.8.	中央經濟社	월간
6	문학사상 2018년 8월	문학사상사	월간
7	한국아동복지학 62호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8	사법행정 제59권 제8호(692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속보삼일총서 1479호, 1480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0	월간 인사관리 2018.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1	이나우스DB 2018년 8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12	이코노미스트 1444호, 1445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3	조세통서DB 2018.5, 2018.7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1	登記情報 58권 제7호	民事法情報センター	월간
2	N.B.L 1125호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3	ケース研究 332호	家庭事件研究会	계간
4	COPYRIGHT V58 N687	著作権情報センター	월간
5	國家學會雜誌 131권 5,6호	有斐閣	격월간
6	金融·商事判例 N1544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7	勞動法律旬報 1914	勞動旬報社	순간
8	登記研究 844호	テイハン	월간
9	文藝春秋 2018.8	文藝春秋	월간
10	發明 V115 N7	發明協會	월간
11	犯罪學雜誌 84권 3호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12	法律判例文獻情報 475호	第一法規	월간
13	法制史研究 N67	法制史学会	연간
14	法學 82권 2호	東京大學法學會	격월간
15	法學教室 454호	有斐閣	월간
16	法學協會雜誌 135권 6호	有斐閣	월간
17	事業再生と債權管理 32권 2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계간
18	銀行法務21 830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19	自治研究 94권 7호	良書普及會	월간
20	判例タイムズ 1448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21	現代消費者法 N39	民事法研究会	계간
22	戶籍 955호	テイハン	월간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66 N1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계간
2	Betriebs-Berater(BB) J73 H29, 3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96 2367, 2368, 2369	BNA	주간
4	Bundesgesetzblatt:Part1&Part2 I ,Nr23,24,25,26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5	CCZ J11 H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6	Computer und Recht 2018 H7	Dr.Otto Schmidt	월간
7	Der Spiegel N28,29	Spiegel	주간
8	DieAktiengesellschaft,ZeitschriftFürDasGesamteAktienw J63 H13-14	Otto Schmidt	격주간
9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1 H14	Kohlhammer	반월간
10	DiePraxis 2018 H7	Helbing & Lichtenhahn	월간
11	Droit Social 2018 N7/8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2	Entertainment law review V29 I6	Sweet & Maxwell	연8회
13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45 H9-12	N. P. Engel	반월간
14	Euzw J29 H1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5	Gol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5 H1,2,3,4,5,6	R. v. Decker's Verlag, G. Schenck	월간
16	GWR J10 H14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7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prechung 7	Stollfuß	월간
1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7 P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계간
1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35 N27,28,29	Bureau of National Affairs(BNA)	주간
20	Juristen Zeitung(JZ) J73 H14	J.C.B. Mohr	반월간
21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8 H5	C.H.Beck	월간
22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 KritV J101 H1	Nomos	계간

No	서명	발간처	간기
23	L'actuali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AJDA) N24,25,26	Dalloz	주간
24	Le Droit Ouvrier N840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2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2 H13	Otto Schmidt	반월간
2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NJW) J71 H29,30,spezial 14	C. H. Beck	주간
27	NeueZeitschriftfürVerwaltungsrecht(NVwZ) J37 H14	C. H. Beck	월간
28	Nj Neue Justiz J72 H7	Nomos	월간
29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J21 H20,21	Verlag C. H. Beck oHG	순간
30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3. H13, 14/15	Manz	반월간
31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38 N1,2	Oxford Journals	계간
32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J38 H4	Gieseking Verlag	격월간
33	Rabels Zeitschrift : fu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82 H3	J. C. B. Mohr	계간
34	Recueil Le Dalloz N26,27,28 (2018)	Dalloz	주간
35	Revue du droit public :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l'Étranger 2018 N3	L.G.D.J.	격월간
3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2018 N2	EDITIONS DALLOZ	계간
37	Strafverteidiger(StV) J38 H8	Alfred Metzner	월간
38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7 P2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3회
39	The Economist 8.4.(N9103)	The Economist Group	주간
40	(The) modern law review VOL81 N4	Blackwell Publishers	격월간
41	TIME 8.6+8.13	Time Asia	주간
42	Versicherungsrecht J69 H11,14	Versicherungswirtschaft e. V.	순간
43	WM(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FürWirtschaf tsUndBa) J72 H27,28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44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65 H13,14	Gieseking	반월간
45	ZeitschriftfurGesetzgebung : ZG J33 H1,2	C.F.Muller	계간

No	서명	발 간 처	간기
4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39 H27,28,30, EWIR 13,14	RWS	주간
47	zfrv(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59 H3	Manz	격월간

